민원안내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민원안내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 이 안내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에 대한 궁금증해소 및 이해향상을 위한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법령개정 등 상황변화에 따라 이 안내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의 내용은 별도의 공지 없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수정요청 사항은『생활방사선 기술지원센터』(1811-8336)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PART.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신고 ---------- 8

1-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 ---------- 10
1-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 변경 / 지위승계 신고 ---------- 15
1-3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수·출입 신고 ---------- 18
1-4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 21

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현황 보고 ---------- 24

2-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유통현황 보고 ---------- 26
2-2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진단 ---------- 28

3 기타 ---------- 30

3-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정기검사 ---------- 32

4 생활방사선법 관련 전자민원 ---------- 34

4-1 전자민원 소개 ---------- 36
4-2 회원가입 안내 및 자격취득 절차 ---------- 37
4-3 전자민원 신청 ---------- 45
4-4 유통현황보고 ---------- 69

PART.02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1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 102

2 라돈측정기 자가측정 매뉴얼 ---------- 107

부록

자주 묻는 답변과 질문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 114

2 생활주변방사선 관계 법령 및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 127

PART 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신고
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현황 보고
3. 기타
4. 생활방사선법 관련 전자 민원

PART 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0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신고

1-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

업무개요

등록대상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서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cisran.kins.re.kr) [민원안내] 탭> 민원서식

등록기준

1. 취급자: 등록기준을 초과한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을 취급하려는 자로, 아래의 사업형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01 원료물질을 채광·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0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 0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0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구분		포타슘40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 각 붕괴계열 내의 핵종 포함		
		K-40	U-238 계열	U-235 계열	Th-232 계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방사능 농도	10 Bq/g	1 Bq/g		
	연간취급방사능량	10,000kBq	1,000 kBq		

※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의 등록기준 대상 여부

■ 국외의 경우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 발행된 시험성적서
■ 국내의 경우 KOLAS 인정 국내 분석기관 중"방사능분석"과 관련하여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및"방사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행된성적서를통해 확인

※ 단, 포타슘 화합물의 경우 화학식과 포타슘 화합물 함량이 기술된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로 방사능 농도 확인 가능(포타슘 화합물의 순도를 통한 환산식사용)

*취득처에서 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 및 등록된 MSDS에 한함

※ K-40 방사능 농도 계산방법 : 하단의 공식을 사용 (포타슘 원자량 39, 포타슘의 비방사능 30.6 Bq/g으로 결정)

$$\text{방사능 농도(Bq/g)} = \frac{\text{k의 원자량}}{\text{물질의 총 분자량}} \times \text{포타슘 화합물 순도} \times 30.6\ \text{Bq/g}$$

2. 등록제조업자: 등록기준 이상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여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하려는 자

제출시기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취급(사용)하기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전자민원(https://cisran.kins.re.kr) / 우편 / 팩스
심사부담금	없음
처리기간	20일
첨부서류	1. 등록신청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작성방법 : 등록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 3.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6.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 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작성 요령**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cisran.kins.re.kr) → 정보마당 → 자료실 → 법령 / 규제 해석 → [제출서류서식]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 첨부서류 표준양식, 세부작성지침 참고**
관련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문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1811-8336)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업무 처리절차

1. 신청서류 제출

- 전자민원 (https://cisran.kins.re.kr)
- 우편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팩스 : 02-397-7280 (원자력안전위원회)

2. 접수 및 심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접수 담당자
- 심사
  - 담당부서 : 생활방사선 안전과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적 검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총괄실)

3. 등록증 발급

- 원자력안전위원회
- 등록증 발급
  -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법령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 발급
  -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www.nssc.go.kr) 생활방사선안전과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4.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공문 우편 발송
- 온라인 조회 : 생활주변방사선정보서비스 (https://cisran.kins.re.kr)
- [민원] 탭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등록신청서 양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16>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록구분	[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 [ ]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 [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 [ ]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 ]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합니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등록증 작성·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 ×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등록 첨부 서류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cisran.kins.re.kr)→정보마당 →자료실 → 법령/규제해석 → [제출서류서식]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 첨부서류 표준양식, 세부작성지침 참고

항목	기술 사항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	① 물질의 종류, 연간취급량(톤),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Bq/g), 연간취급방사능량(MBq) 기재 ② 증빙서류의 첨부 ▶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인정기관 발급 필수) 포타슘화합물은 MSDS를 이용한 계산결과서로 갈음 가능 ▶ 원료물질 등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계획서	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 물질의 종류, 취득형태, 취득처, 특기사항 ②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 물질의 종류, 판매형태, 판매분야, 주요판매처, 특기사항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 처분, 재활용 ▶ 물질의 종류, 구분, 처리/처분/재활용 방법, 위탁업체명/지역, 특기사항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 취급형태, 취급공정, 제품 또는 원료물질 제조 시 사용된원료물질 등의 함유 분율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① 개요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취급하는 원료물질 등에 대한 정보 ② 조직 ③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 ▶ 장비 및 시설의 운영, ▶ 측정절차, 선량평가방법 및 종사자 피폭 저감을 위한 조치 ▶ 건강진단
기록 관리 등	① 정보제공 ② 기록 ③ 보고 ④ 신고 ⑤ 기타
가공제품 종류·모델명·방사능농도사용량에 관한 서류 (등록제조업자만 해당)	① 가공제품의 일반정보 ▶ 종류, 모델, 취급형태, 제품용도, 제품 중량(kg 개당), 주원료명 ②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등의 종류, 농도 및 사용량 ▶ 종류, 원료명, 방사성 핵종, 방사능농도(Bq/g), 함유분율(w/o) ③ 가공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

1-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

업무개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위승계 시 신청하는 민원

신청서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서'

■ - 다운로드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kins.re.kr) [민원안내] 탭> 민원서식

등록변경/지위승계대상

1. 등록변경 사유

- 01 취급 물질의 추가 등록 또는 기존 등록물질의 취급 중단
- 02 등록 물질의 방사능 농도, 취급수량의 변경
- 03 등록물질의 유통경로 변경(예: 수출입국)
- 04 대표자 변경 등에 따른 사업소 정보 변경 등

2 지위승계 사유 (지위승계를 받는 사업자가 작성)

- 01 사업체 양도, 상속, 합병 등에 따른 사업소 정보 변경 등

제출시기

등록 사항을 변경하기 전

신청방법

전자민원(https://cisran.kins.re.kr) /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

심사부담금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첨부서류

1. 등록변경신고 시

- 0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합니다)
- 0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내용에 따라 상이)
  - ■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취급원료물질 추가 : 방사능농도분석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록첨부서류
- 03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2. 지위승계신고 시

- 0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사업의 양도, 양수인의 경우 :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 02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관련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변경/ 지위승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 전자민원 (https://cisran.kins.re.kr)
- 우편접수
  - 등록변경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지위승계 :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총무팀 문서접수 담당자 앞

2. 접수 및 심사

1. 등록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서접수 담당자
- 심사
  - 담당부서 : 생활방사선안전과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적 검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총괄실)

2. 지위승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서류접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서접수 담당자
- 심사
  - 담당부서 : 생활방사선총괄실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등록증 발급

- 원자력안전위원회
- 등록증 발급
  -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법령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 발급
  -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www.nssc.go.kr) 생활방사선안전과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4.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공문서 우편 발송
- 온라인 조회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https://cisran.kins.re.kr)
  [민원] 탭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서 양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6.>

[ ] 등록변경
[ ]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회사형태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당초 등록사항
	변경등록사항	비고(변경사유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의 [ ]등록변경 [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등록변경신고 시 가.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합니다)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다.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2. 지위승계신고 시 가.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등록증 작성·발급	→	등록증 수령
신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1-3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수·출입 신고

업무개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서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수출입 신고서' ■ 다운로드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kins.re.kr) [민원안내] 탭> 민원서식
신고대상	취급자가 수출입 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등록제조업자가 수출입 하는 가공제품
제출시기	등록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 할 때마다
신청방법	전자민원 (https://cisran.kins.re.kr) / 우편접수
심사부담금	없음
처리기간	10일
첨부서류	-
관련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변경/지위승계 신고 업무 처리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 전자민원 (https://cisran.kins.re.kr)
- 우편접수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총무팀 문서접수 담당자

2. 접수 및 심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서류접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서접수 담당자
- 심사
  - 담당부서 : 생활방사선총괄실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신고내용 적합성 확인: 수출입일자, 국가명, 물질명, 방사성핵종및농도, 방사능량 등
- 심사 결과 검토 및 공문
  -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법령에 적합한 경우 공문통보

3.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공문서 우편 발송
- 온라인 조회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https://cisran.kins.re.kr),
  [민원] 탭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수출입 신고서 양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6>

수출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수출입 대장	수출입 구분	[ ]수출 (목적지:)	[ ]수입 (원산지:)	
	수출입 날짜			
	운송방법			
	종류	[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 ]가공제품 [ ]기타 ( )		
	방사성 핵종			
	방사능량(Bq)			
	가공제품 종류, 모델명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수출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 류 검 토	→	신고서 처리·발급	→	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4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업무개요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신청서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 다운로드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cisran.kins.re.kr) [민원안내] 탭> 민원서식
제출시기	공정부산물 처리, 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마다
신청방법	전자민원 (https://cisran.kins.re.kr) / 우편접수
심사부담금	없음
처리기간	20일
첨부서류	1.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관련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업무 처리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 전자민원 (https://cisran.kins.re.kr)
- 우편접수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총무팀 문서접수 담당자

2. 접수 및 심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서류접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
- 심사
  - 담당부서 : 생활방사선총괄실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보완사항 발생 → 유선 또는 공문으로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심사결과 검토 및 신고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심사 결과 검토 및 공문
  -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법령에 적합한 경우 공문통보
  -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www.nssc.go.kr) 생활방사선안전과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4. 결과 확인

- 결과 통보 : 공문서 우편 발송
- 온라인 조회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https://cisran.kins.re.kr)
  [민원] 탭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양식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본사 명칭	
	사업소 명칭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 예정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 처리 · 통지	→	확인
신고인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PART 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02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유통현황 보고

2-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유통현황 보고

업무개요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 발생, 보관, 판매, 처분(이하 '유통현황'이라고 한다)을 기록, 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탁: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해야 함.

기록보관사항

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구 분	기록 시기	보관 기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수량 및 수출입처	수출입한 때마다	5년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취득한 때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 수량 및 판매처	판매한 때마다	
○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	발생한 때마다	
○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물의 종류,수량 및 처리일시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한 때마다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날짜	조치한 때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2. 등록제조업자

구 분	기록 시기	보관 기간
○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 수량 및 취득처	취득한 때마다	5년
○ 제조 · 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의 종류, 모델명, 수량,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	제조 · 수출입 또는 판매한 때마다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 및 날짜	조치한 때마다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	

보고사항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연간 유통현황 및 종사자 보호 조치를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보고기한에 맞춰 보고해야 함

구 분	보고기한
1. 취급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보관현황 포함)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종사자 피폭방사선량 포함)	매년 1월 31일까지
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주1)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2. 등록제조업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 (보관현황 포함)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가공제품의 제조 · 수출입 및 판매 현황 (보관현황 포함)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종사자 피폭 방사선량 포함)	매년 1월 31일까지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주1)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주1) 해당 결과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고시제 2조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31조제3항제3호)

보고시기

상반기 (7월 31일 이내) : 금년도 1.1~ 6.30 유통현황 제출

하반기 (1월 31일 이내) : 전년도 7.1~12.31 유통현황 제출

보고방법

CISRAN 전자민원 신청

관련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2 방사선 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업무개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건강진단대상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원료물질 등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주(主) 근무 장소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시설과 같은 공간이어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의한 피폭의 우려가 있는 사람

건강진단시기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 관리 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3개월 이내
2. 처음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3.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연간 50mSv, 5년간 100mSv)를 초과한 경우

건강진단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 01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 02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다음 각 목의 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
   - 01 말초혈액도말검사
   - 02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한도(연간 50mSv, 5년간 100mS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 가능

■ 위의 건강진단 항목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분야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며, 원자력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사선 분야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 함.

건강진단기관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진단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보고시기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방법

1. 우편 [1349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삼평동, DTC타워 1관 7층)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방호팀
2. 방사선 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 http://rawis.kofons.or.kr

PART 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03

기타

3-1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정기검사

업무개요

생활방사선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한 원료물질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재활용 고철 취급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주기

검사의 주기는 취급·사용하는 원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감시기 대수에 따라 정해짐

구분	검사주기
1.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가목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짧은 검사 주기를 적용)**	
가. 포타슘 40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1) 연간 취급 · 사용량이 등록기준 최소 수량의 100배 미만	매 3년
2) 연간 취급 · 사용량이 등록기준 최소 수량의 100배 이상 1000배 미만	매 2년
3) 연간 취급 · 사용량이 등록기준 최소 수량의 1000배 이상	매 1년
나.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1) 연간 취급 · 사용량이 등록기준 최소 수량의 10배 미만	매 3년
2) 연간 취급 · 사용량이 등록기준 최소 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	매 2년
3) 연간 취급 · 사용량이 등록기준 최소 수량의 100배 이상	매 1년
2. 감시기 설치 · 운영대상 재활용 고철 취급자	
1) 감시기 운영 대수 1대	매 3년
2) 감시기 운영 대수 2대 이상 5대 이하	매 2년
3) 감시기 운영 대수 6대 이상	매 1년

검사항목

1. 원료물질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 01 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 02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 · 보관에 관한 사항
- 0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 관리 시의 준수사항
- 04 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취급자만 해당)
- 05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시의 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록제조업자만 해당)

2. 재활용 고철 취급자

- 01 감시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02 감시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03 유의물질 발생·조치에 관한 사항
- 04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결과통보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통보내용 및 조치사항

1. 통보내용 : 검사 합격 여부,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및 시정·보완 요구내용
2. 조치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이행하여야 함.

관련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동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PART 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04

생활방사선법 관련 전자민원

4-1
전자민원 소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관련 민원 신청, 처리 진행 현황 확인, 민원처리 결과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https://cisran.kins.re.kr)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할 예정이거나 현재 취급 중인 기관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를 이용 시 우편 민원신청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CISRAN 시스템 메뉴 영역입니다.
02.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등록·등록변경 민원서류 우편 접수처 주소 및 연락처입니다.
04. 민원조회에서 접수 완료, 처리중(KINS), 완료 별로 보여주고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민원상태에 대한 목록이 표시됩니다.
05.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회원가입 안내 및 자격취득 절차

온라인 신고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 등록 역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의 완료는"취급자등록증"또는"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께서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온라인 민원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신규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은 본인인증 후에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완료되는데, 본인 확인에 사용되는 아이핀 계정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동의 → 본인인증 → 개인정보입력 → 가입완료

4-2-1 | 회원가입 선택

- 회원가입을 위해 초기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4-2-2 | 이용약관 동의

- 회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확인 후 관련사항 체크 및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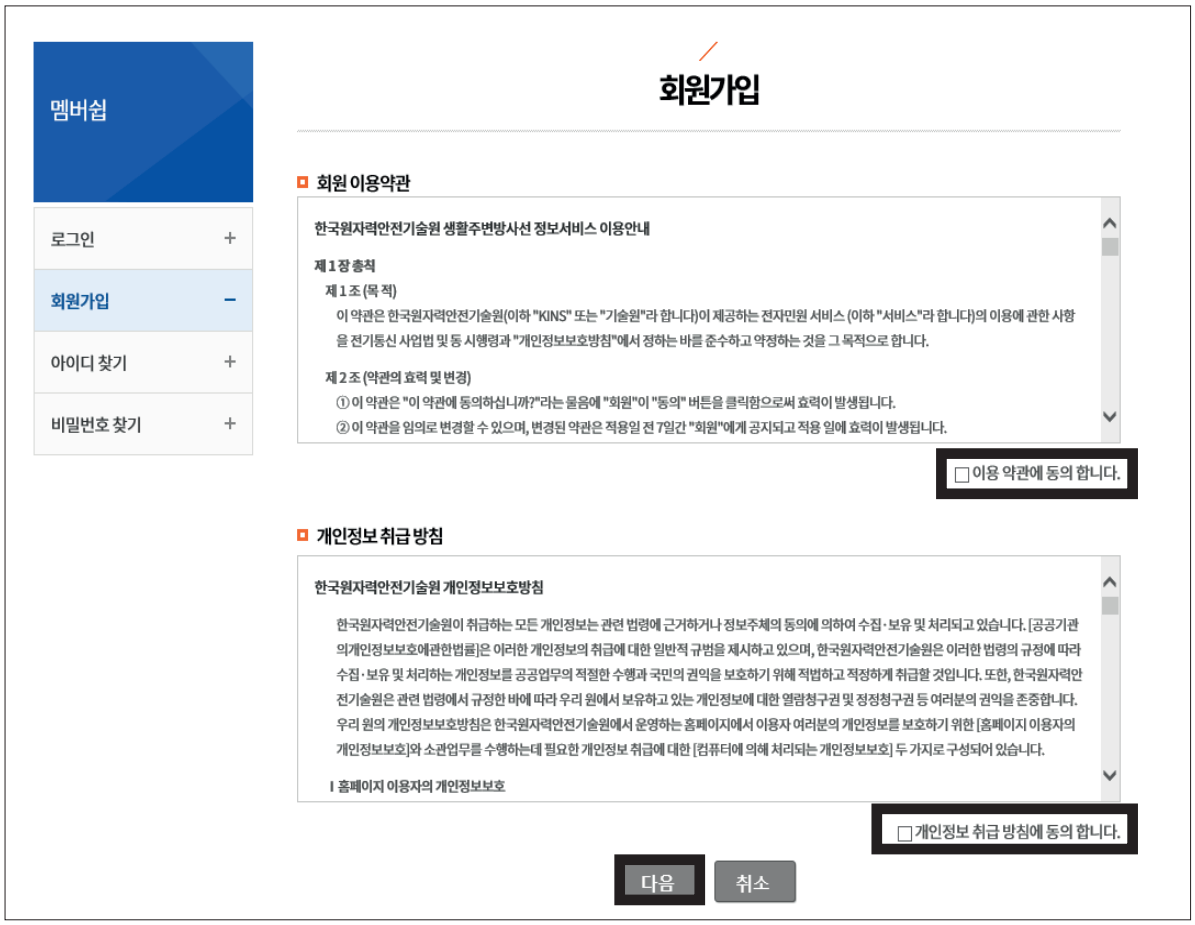

4-2-3 | 실명 확인

- 아이핀(i-PIN)인증 또는 핸드폰 인증 중 선택 후 회원가입을 계속 진행합니다.



4-2-4 | 회원 정보 입력 및 가입완료

- 회원 정보 입력란에 *필수 입력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알림 수신설정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며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4-2-5 | 신고 민원 접수 자격취득 절차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신고 민원 접수를 위해서 반드시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증 인증 절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신규등록을 통해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 및 등록증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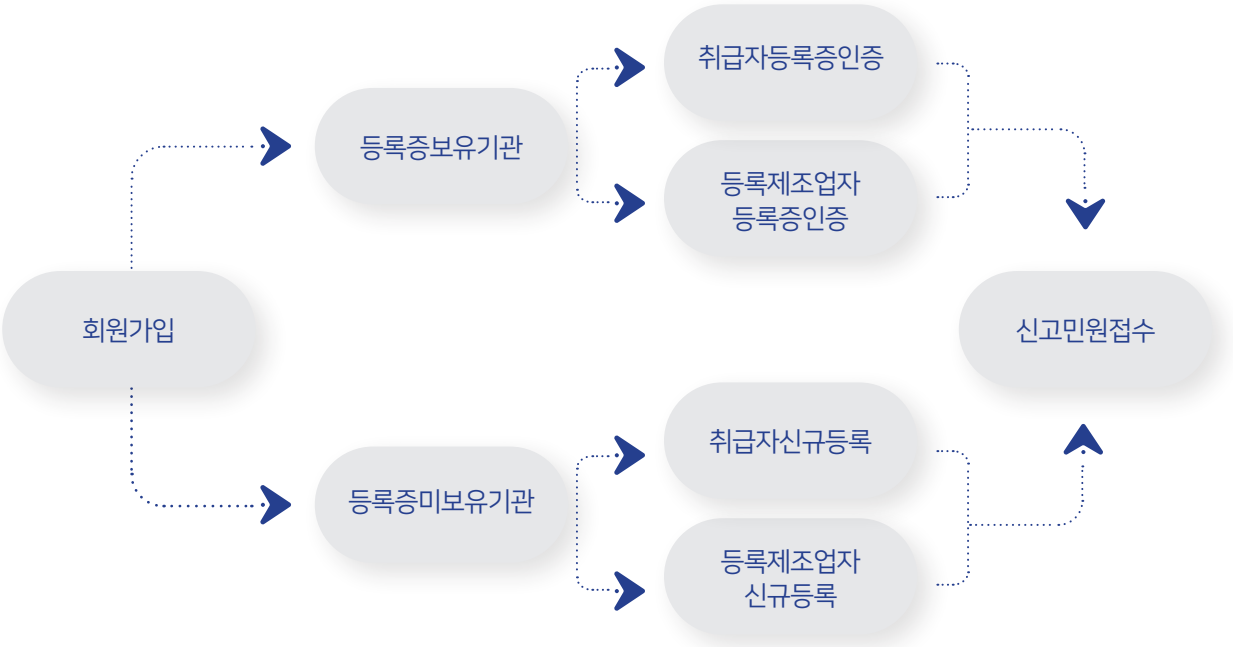

01. 등록증보유기관

취득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취급자 등록인증이 완료되면 본 사이트를 통한 각종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id' 또는 '정보수정'을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 '취급자 등록' 인증을 클릭합니다.
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및 취급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일반인증'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인증이 완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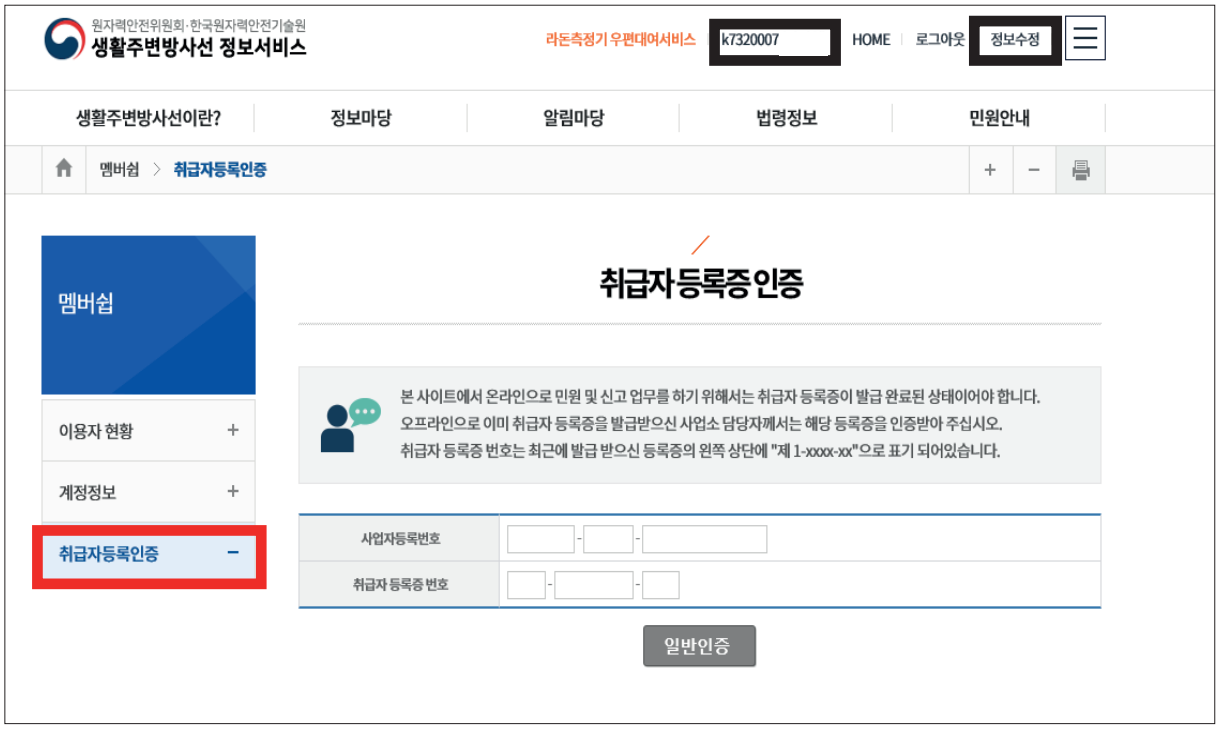

02. 등록증 미보유한 기관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민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승인이 나게 되며, 신청 당시 선택한 수단에 따라 우편 수령 또는 온라인 출력을 통해 발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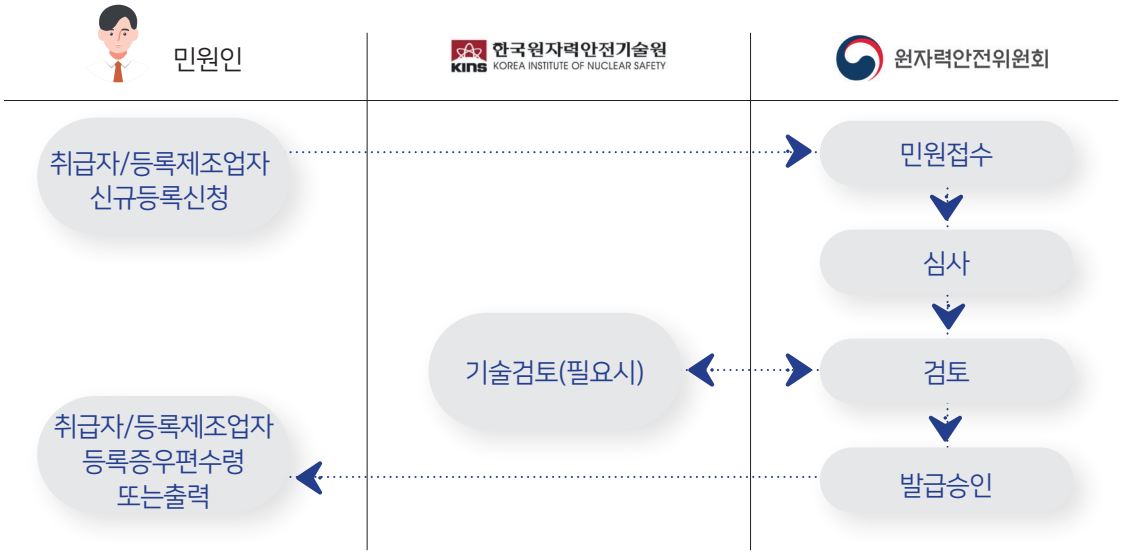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절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취급자 신규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로그인 후 메인화면 [전자민원 신청] → '원료물질,공정부산물 취급자 신규등록', '가공제품등록 제조업자 신규등록'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거나, 오른쪽 [민원신청/ 조회] →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민원서류를 작성하시어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담당자 앞]



4-2-6 | 공인인증서안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 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금융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인증서가 있습니다. 방사선인허가 전자민원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인허가 전용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1. 발급 대상 인증서 및 비용

상품명	사용 용도	부가세
사업자용(법인/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인증서 전자계약, 전자입찰, 전자구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서비스 업무, 온라인 주식 거래	110,000원
방사선인허가전용	방사선 인허가 전자민원 신청 및 발급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 [http://rasis.signra.com]	11,000원

02.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 취급자등록증을 보유한 기관에서 본 사이트에 인증받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취급자 등록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에 인증이 완료됩니다.



- 취급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취급자 신규등록 신청 시 등록증 수령 방법으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신청에 대하여 최종 발급 승인이 완료된 후 [마이페이지 > 취급자등록증 인증] 메뉴에서 법인 인증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4-3

전자민원 신청

각종 신고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원료물질 등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등록증 미보유 기관에서는 신고 민원신청은 불가능하며, 취급자/등록제조업자 신규등록 신청만 가능합니다.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 모든 신고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신청 가능 업무>

-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 전

- 취급자/등록제조업자 신규등록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 후

- 등록변경 신고
- 수출입신고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재활용 신고
- 유통현황보고

4-3-1 |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신청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약칭 : 생활방사선법)이 개정되어, 2019.7.16.부터 시행 중입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취급자 또는 등록제조업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 민원신청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정보 입력, 구비서류 첨부, 최종 확인 및 제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통해 심사과정 및 등록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01. 1단계 [메인화면] 전자 민원신청

→ 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신규등록' 선택

→ 등록제조업자는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 신규등록'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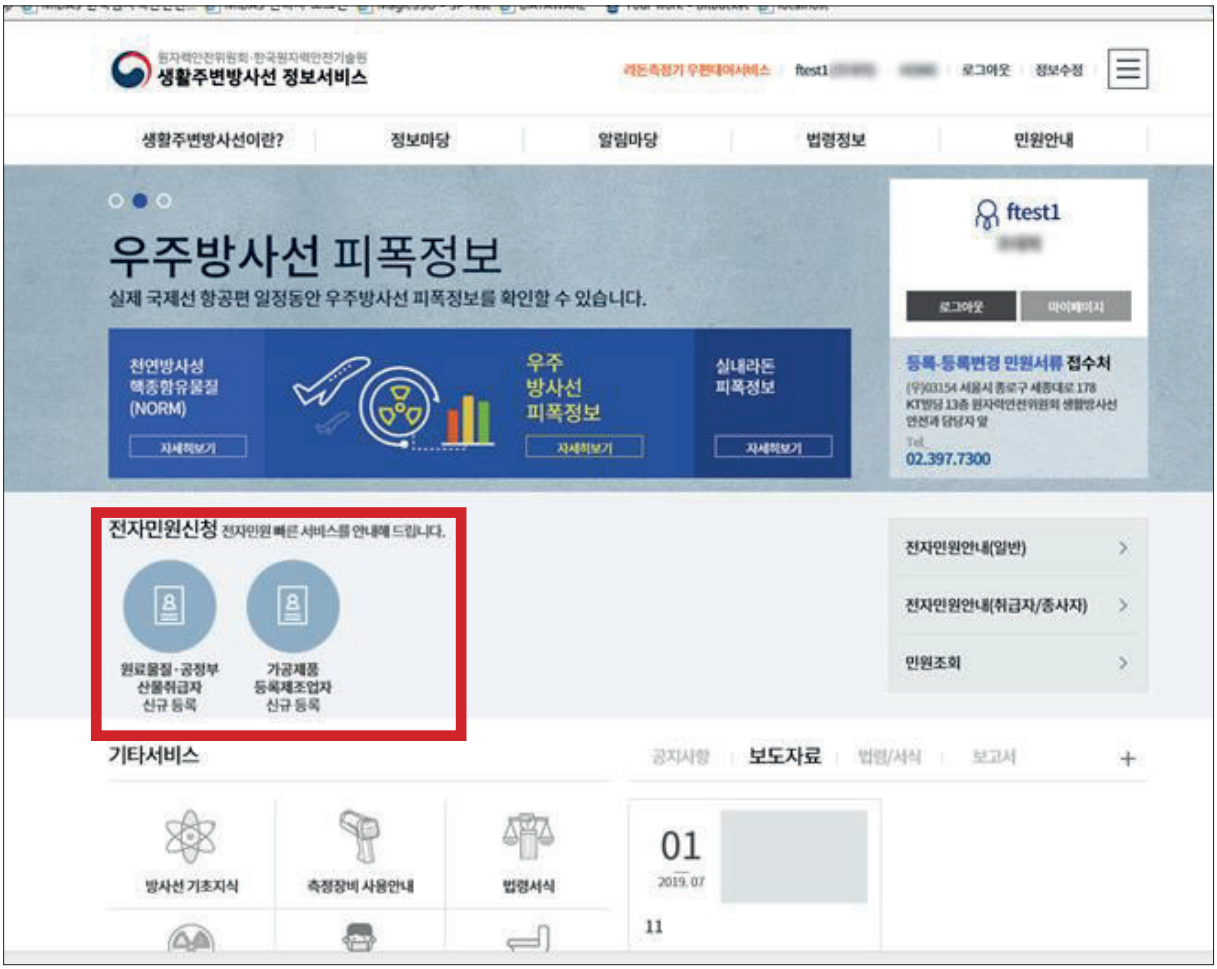

02. 2단계 : '기관정보입력'화면으로 진입

-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필수입력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

① 사업소 정보 입력란으로 사업소명, 사업소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소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필수 입력

② 본사 정보 입력란으로 본사명, 대표자명, 등록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필수 입력

→ 등록 구분은 중복체크 가능함으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체크

→ 등록제조업자의 경우, 등록구분란에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으로 자동 입력

③ 작성 후 '다음' 클릭



03. 3단계 : '구비서류등록'화면으로 진입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동일)

- 작성된 구비서류를 등록하는 화면

①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

② '파일 첨부' 클릭하거나 첨부할 파일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첨부 가능

③ 첨부 후 '다음' 클릭



04. 4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화면으로 진입

① 작성된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 요청

※ 신청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함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 최종 확인 절차 필요



'민원신청 조회 및 등록증 발급'

① 민원안내 상단 메뉴 클릭

②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조회' 클릭



민원신청 내역' 조회 및 '등록증' 출력

- 신청 민원의 처리 진행 과정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작성한 내용 확인 가능 화면

① 신청내용 클릭 시 상세정보화면으로 이동

②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이 조회되며, '처리 완료' 상태에서 '취급자등록증' 출력 가능하도록 활성화됨.

※ 출력 시 주의사항

- 최초 1회는 등록증 원본 다운로드, 이후 다운로는 사본임.
- 리포트 뷰어 미국 지원 브라우저 : IE9 이하, Chrome42 이하, FireFox39 이하, Safari, Opera31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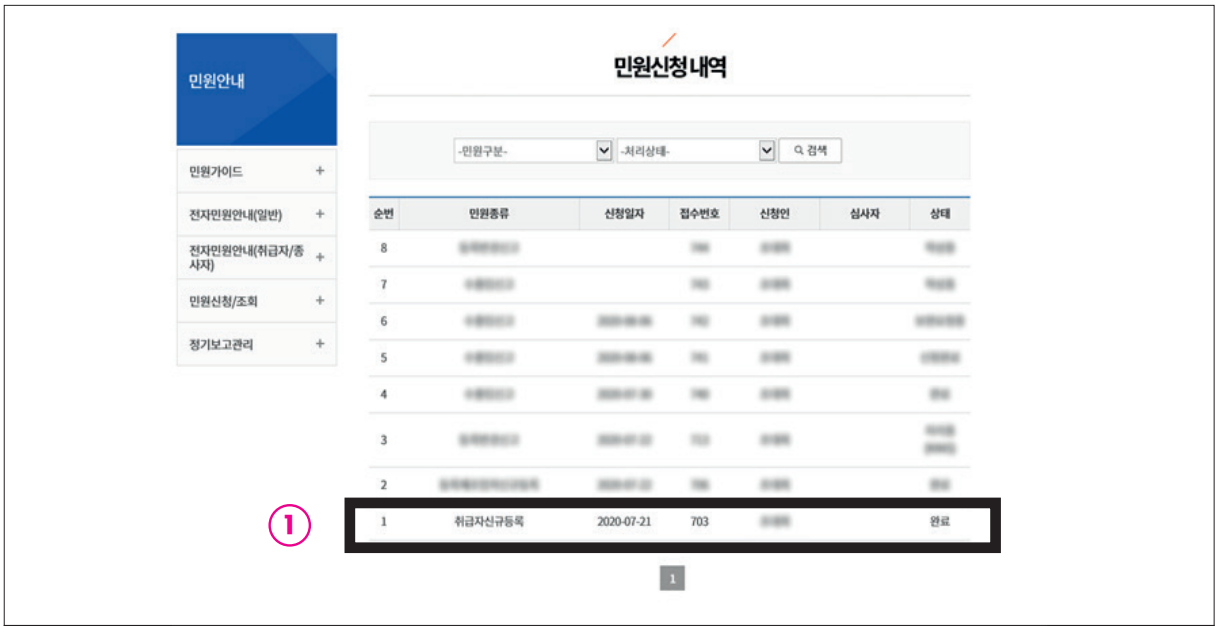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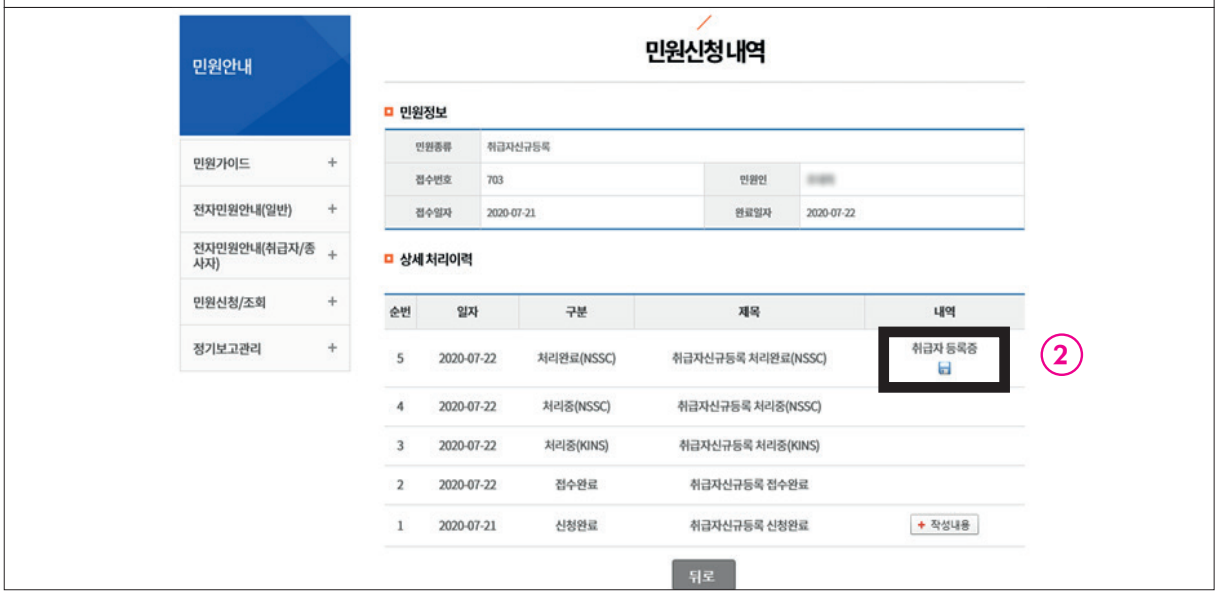

※ 취급자등록증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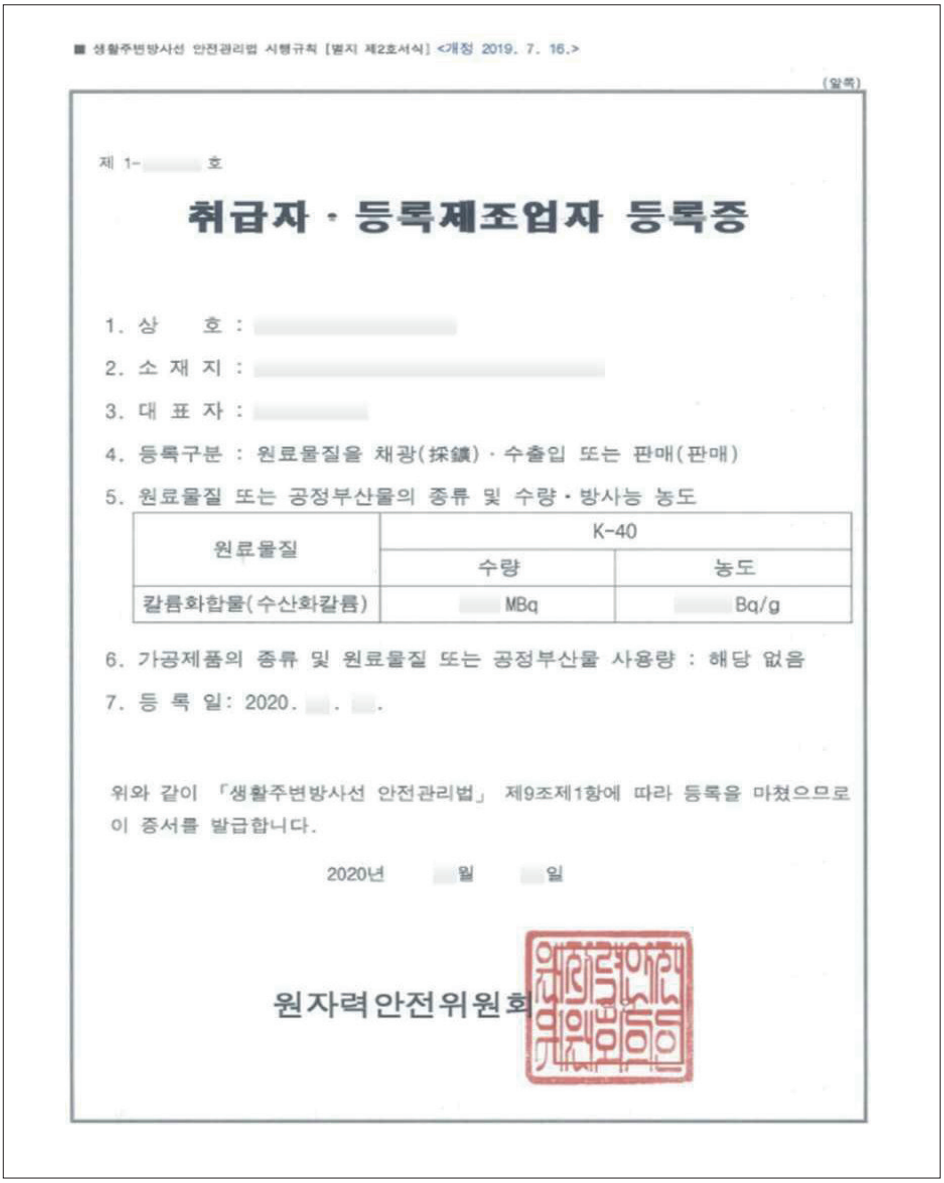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6.>

(앞쪽)

제 1- 호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1. 상　　호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등록구분 : 원료물질을 채광(採鑛) · 수출입 또는 판매(판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 방사능 농도

원료물질	K-40	
	수량	농도
칼륨화합물(수산화칼륨)	MBq	Bq/g

6. 가공제품의 종류 및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량 : 해당 없음
7. 등 록 일: 2020. . .

위와 같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4-3-2 | 등록변경 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등록 시 제출한 첨부서류 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급자(4종) : 명세서, 유통 계획서, 취급에 관한 설명서, 종사자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각 1종
- 등록제조업자(5종) : 취급자 등록 첨부서류 4종 및 가공제품에 관한 설명서 1종

전자 민원신청으로 등록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변경항목 선택, 변경내용작성, 변경대조표, 구비서류 첨부 부 및 최종 확인 제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민원안내] → 민원신청/조회 → 신청 → '등록변경신고' 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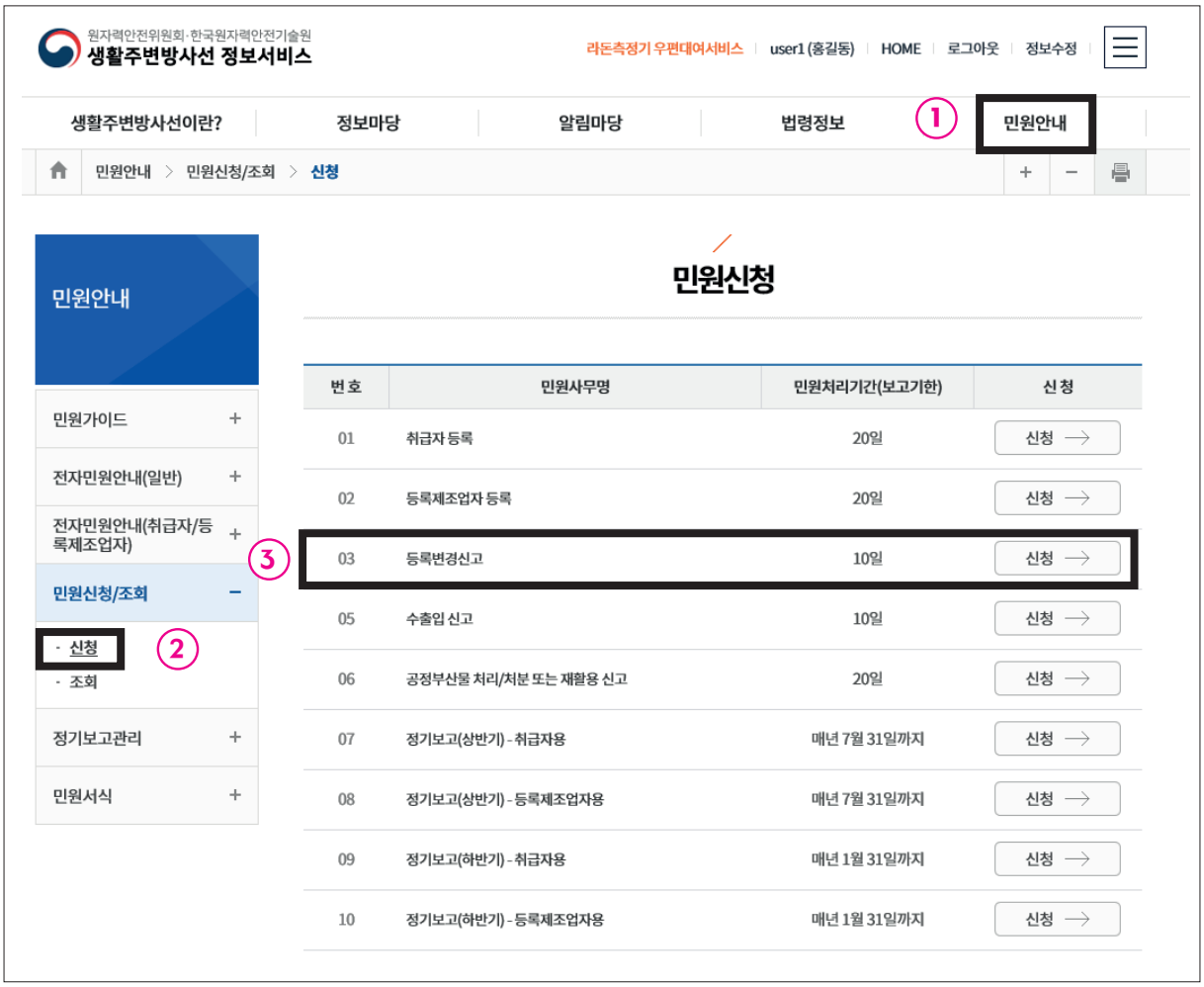

2단계 : '변경항목 선택'화면으로 진입

■ 취급자 4종 첨부서류 내용 중 변경사항 선택

① 변경 신고할 항목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예시)을 체크

② 선택 완료 후 '다음' 클릭



3단계 : 변경내용 작성 화면 진입 [기관정보 변경 시]

■ 선택한 변경항목에 따라 변경 신고할 내용 입력하는 화면

① 변경할 본사 및 사업소 정보수정, 신규등록과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항목 존재

② 수정 후 필수로'저장' 버튼 클릭 후'다음' 클릭



3단계 : 변경내용 작성 화면 진입 [취급자-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등록내용 변경 시]

- 선택한 변경항목에 따라 변경 신고할 내용 입력하는 화면
  ① 등록되어 있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목록이 조회됨. 추가, 수정 및 삭제 가능함.
  ② 추가 등록할 경우, 추가 버튼 클릭 시 입력할 수 있도록'행'추가됨.
  ③ 수정, 추가 입력 후 반드시 하단'저장'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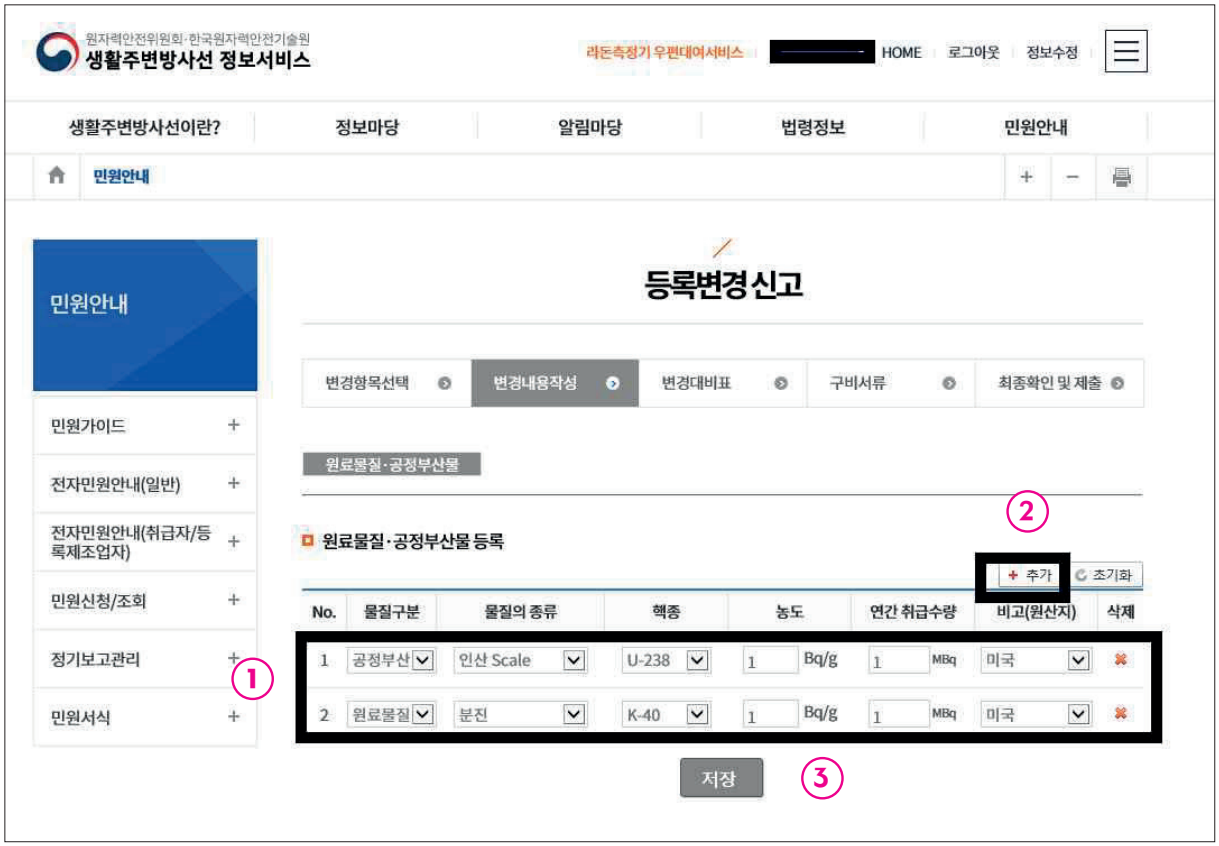

3단계 : 변경내용 작성 화면 진입 [등록제조업자-가공제품 등록내용 변경 시]

- 선택한 변경항목에 따라 변경 신고할 내용 입력하는 화면

① 등록되어 있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목록이 조회됨. 추가, 수정 및 삭제 가능함.

② 선택한 가공제품의 원료물질 추가 등록할 경우, '추가' 버튼 클릭 팝업

③ 호출된 사용 원료물질 등록 화면에 해당사항 모두 필수 입력

④ 수정, 추가 등록 후 필수 '저장' 클릭

⑤ 변경내용 작성 완료 후 필수 '저장' 클릭



4단계 : 변경대조표 화면

-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변경 신청정보가 변경대비표로 화면에 보여짐.
- 변경 전, 후 내용을 재확인 후 '다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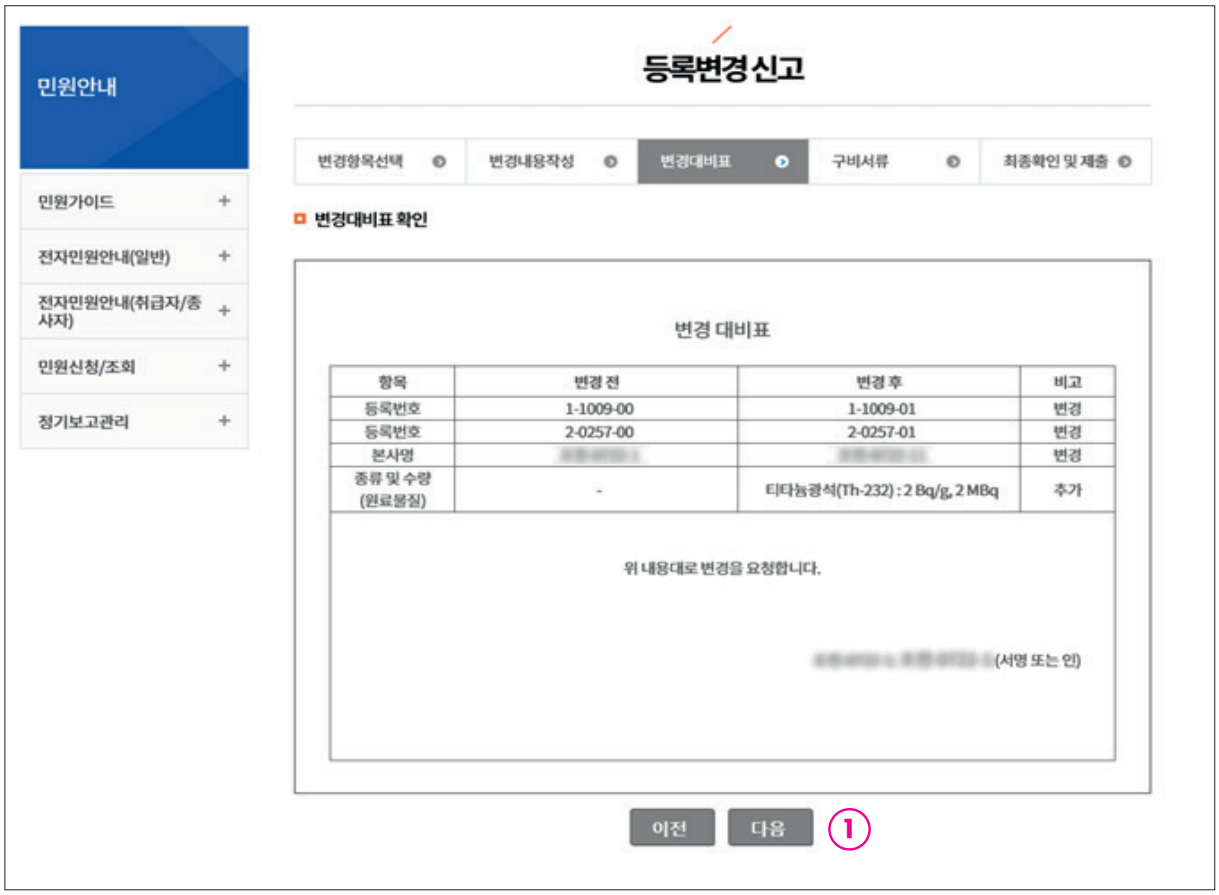

5단계 : 구비서류 첨부

- 필수구비서류 목록 확인 후 해당되는 서류 첨부

① 파일 첨부 버튼을 선택하거나, 첨부할 파일을 직접 구비서류 등록란에 넣어 파일 첨부

② 필수구비 서류 첨부 후'다음' 클릭 → 최종 확인 및 제출



6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작성된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민원신청

※ 신청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함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 최종 확인 절차 필요



민원신청 내역 '조회' 및 '등록증' 출력

- 신청 민원의 처리 진행 과정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작성한 내용 확인 가능 화면

① 신청 내역 클릭 시 상세정보화면으로 이동됨.

②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이 조회되며, '처리 완료' 상태에서 취급자등록증 출력 가능하도록 활성화되며, 하단의'작성내용' 클릭 시 해당 민원 신청내역의 작성내용 확인 페이지 이동됨.

※ 출력 시 주의사항

- 최초 1회는 등록증 원본 다운로드, 이후 다운로는 사본임.
- 리포트 뷰어 미지원 브라우저 : IE9 이하, Chrome42 이하, FireFox39 이하, Safari, Opera31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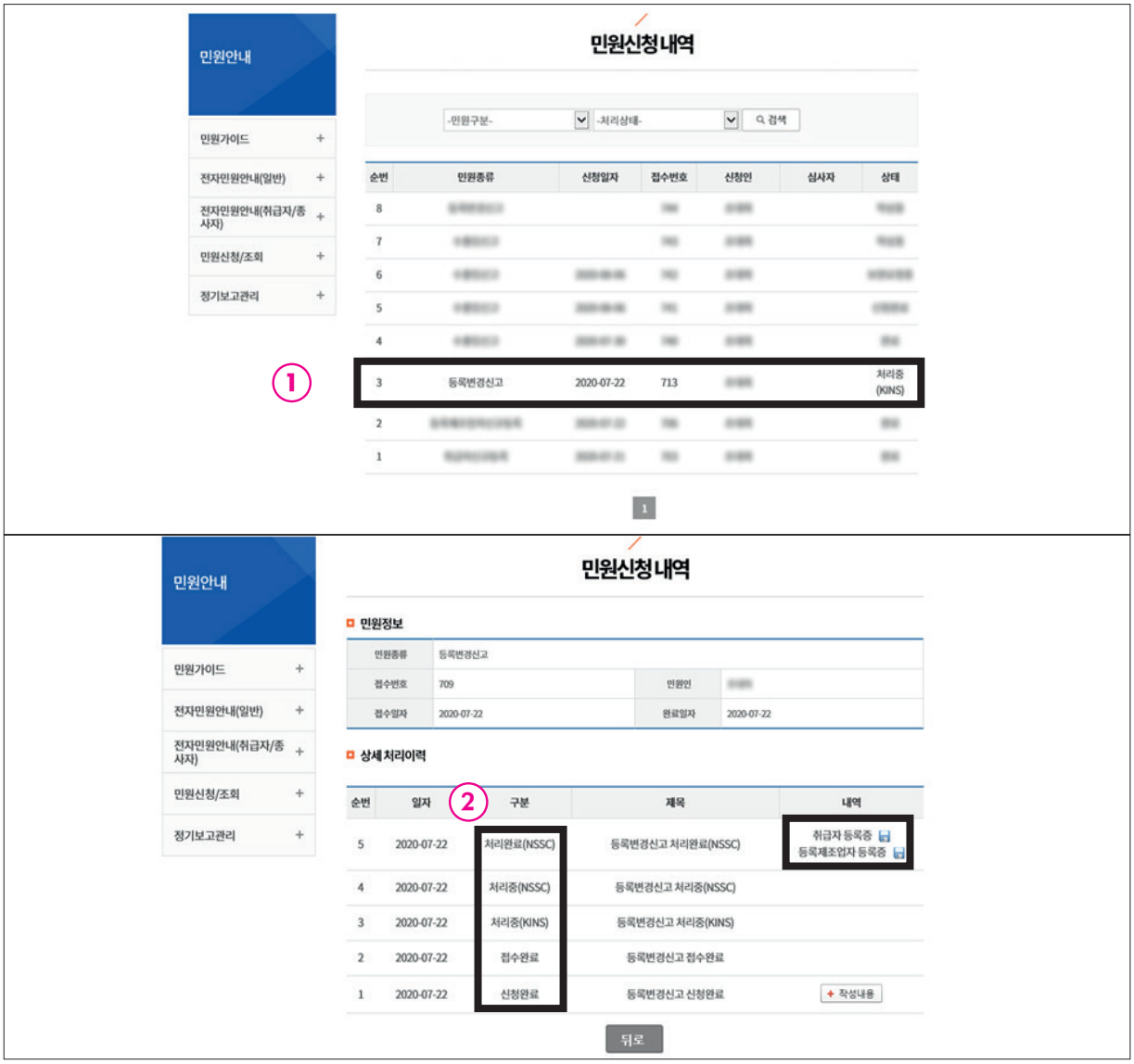

4-3-3 | 수출입 신고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하는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 민원신청은 수, 출입신고 관련 민원 업무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정보등록, 취급물질등록 및 최종 확인 제출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 [민원안내] → 민원신청/조회 → 신청 → '수출입 신고' 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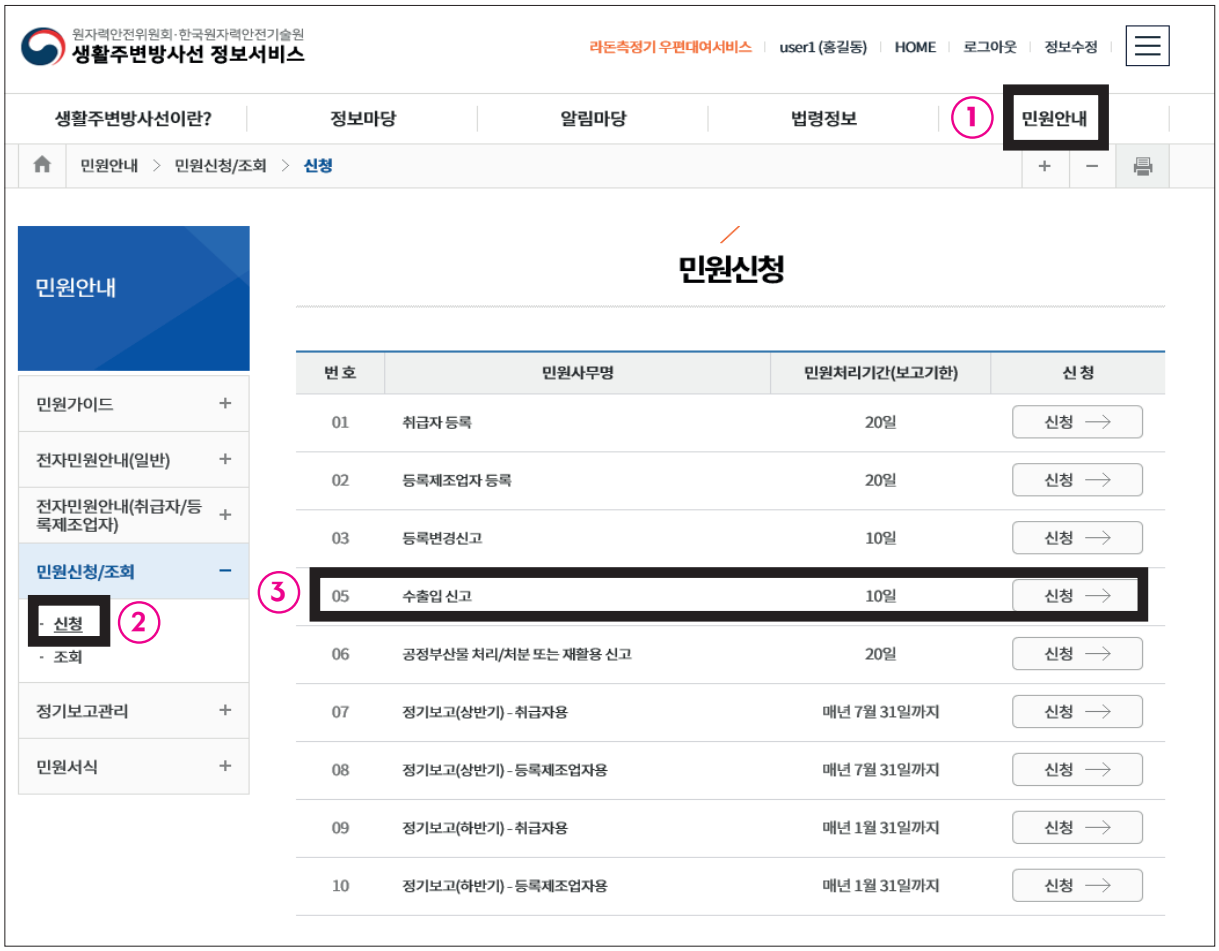

2단계 : 기관정보 확인 화면

① 기관정보 확인 후 '다음 ' 클릭



3단계 : 취급물질 등록

- 수출입 하려는 물질 정보를 입력하도록 화면 전환

① '추가'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 대상 물질로 선택 가능하도록 화면 호출됨.

-'삭제' 해당 내용 삭제

② 수출입 할 물질 체크 후

③ '추가' 클릭하여 표시된 물질/제품 내용 추가

④ 모두 입력되었다면 '다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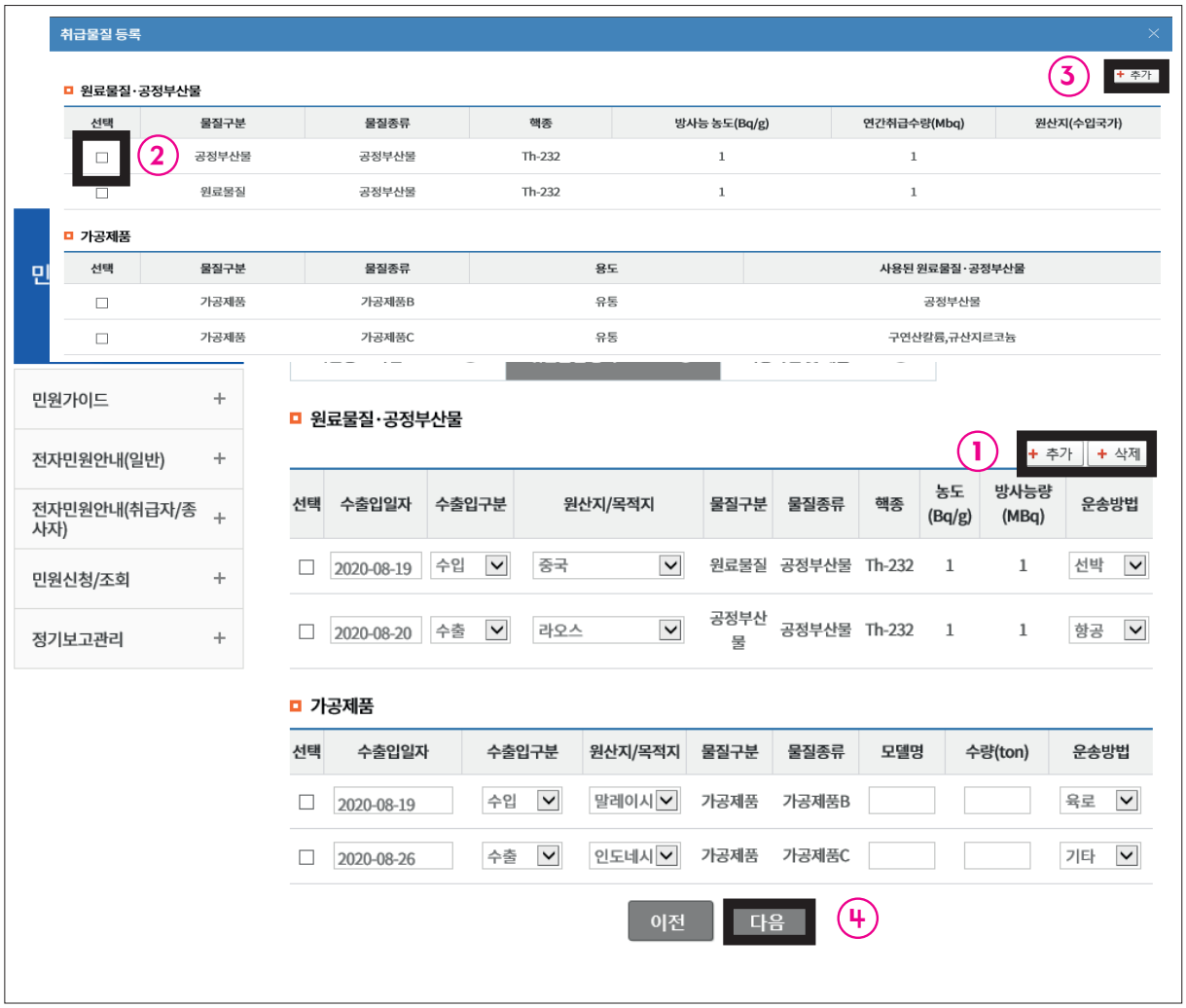

4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작성된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신고' 클릭, 최종 민원신청

② 별첨-수출입 신고 내용 (다음 페이지 확인)

※ 신청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함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 최종 확인 절차 필요



4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 작성된 별첨 내용 확인



민원신청 내역 '조회 및 '통보공문' 출력

- 신청 민원의 처리 진행 과정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 작성한 내용 확인 가능 화면

① 신청 내역 클릭 시 상세정보화면으로 이동됨.

②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이 조회되며, '처리완료'상태에서 '수출입통보'공문 출력 가능하도록 활성화되며, 하단의 '작성내용' 클릭 시 해당 민원 신청내용의 작성내용 확인 페이지 이동됨.

※ 출력 시 주의사항

- 리포트 뷰어 미지원 브라우저 : IE9 이하, Chrome42 이하, FireFox39 이하, Safari, Opera31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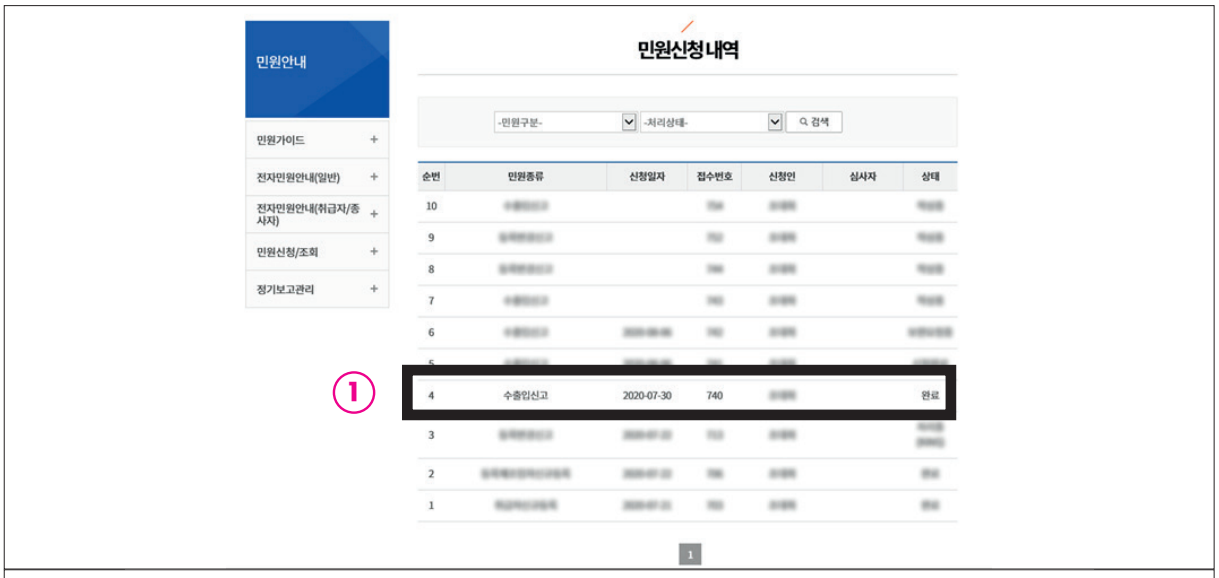



※ 수출입 신고 공문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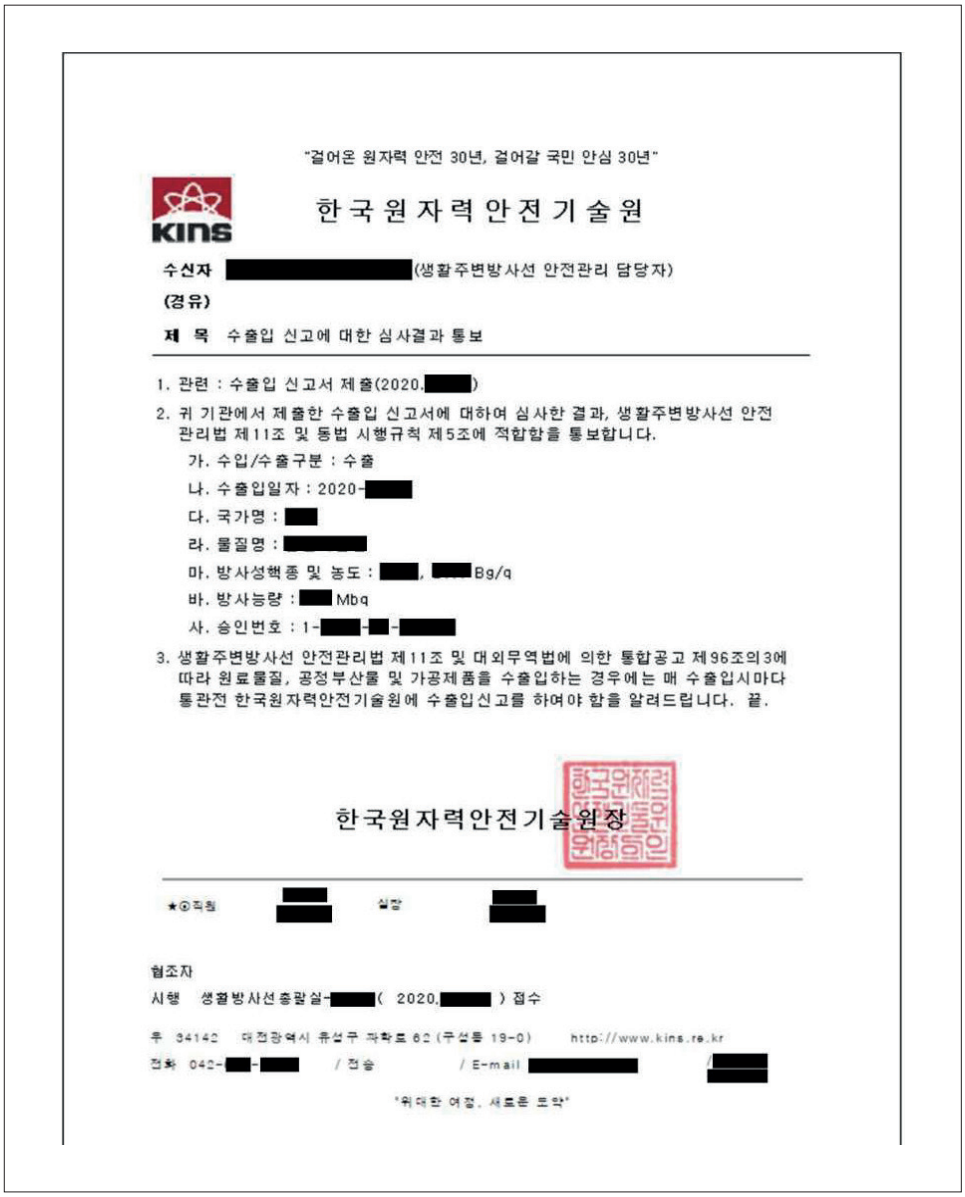

"걸어온 원자력 안전 30년, 걸어갈 국민 안심 30년"

KINS

한 국 원 자 력 안 전 기 술 원

수신자 [redacted](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

(경유)

제 목 수출입 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1. 관련 : 수출입 신고서 제출(2020.[redacted])
2. 귀 기관에서 제출한 수출입 신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함을 통보합니다.
   - 가. 수입/수출구분 : 수출
   - 나. 수출입일자 : 2020-[redacted]
   - 다. 국가명 : [redacted]
   - 라. 물질명 : [redacted]
   - 마. 방사성핵종 및 농도 : [redacted], [redacted]Bq/g
   - 바. 방사능량 : [redacted]Mbq
   - 사. 승인번호 : 1-[redacted]-[redacted]-[redacted]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 제96조의3에 따라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출입시마다 통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직원 [redacted] 실장 [redacted]

협조자

시행 생활방사선총괄실-[redacted](2020.[redacted]) 접수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 19-0) http://www.kins.re.kr

전화 042-[redacted] / 전송 / E-mail [redacted]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4-4
유통현황 보고

생활방사선법 제12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한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제조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 판매 등 유통현황을 기록 보관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7.16.>

구 분	보 고 기 한
1. 취급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나.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보관 현황1)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	
라. 공정부산물의 발생 현황1)	
마. 공정부산물의 처리 · 처분 및 재활용 현황2)	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
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3)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2. 등록제조업자	
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	매 반기 경과 후1개월 이내
나. 가공제품의 제조 · 수출입 및 판매 현황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	매년 1월 31일까지
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3)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상, 하반기보고사항

하반기보고사항

주1) 별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추가

주2) 본 보고에는 해당사항 없음

주3) 해당 결과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보고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제2조제2항)

4-4-1 | 정기보고 절차도

정기보고 절차도_반기



정기보고 절차도_연간



4-4-2 | 정기보고 메뉴

민원안내 → 민원신청/조회 → 신청 → 유통현황 보고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상반기, 하반기 정기보고 일정에 따른 메뉴 신청

① 정기보고(상반기)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 금년 1.1 ~ 6.30 내용등록

② 정기보고(하반기) 취급자 / 등록제조업자 : 전년 7.1 ~ 12.31 내역 등록

③ 정기보고현황 : 정기보고 등록 화면으로 이동

정정보고요청 : 정정보고요청 화면으로 이동

※ 업체가 취급자이며 등록제조업자 일 때 정기보고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각각의 정기보고를 완료해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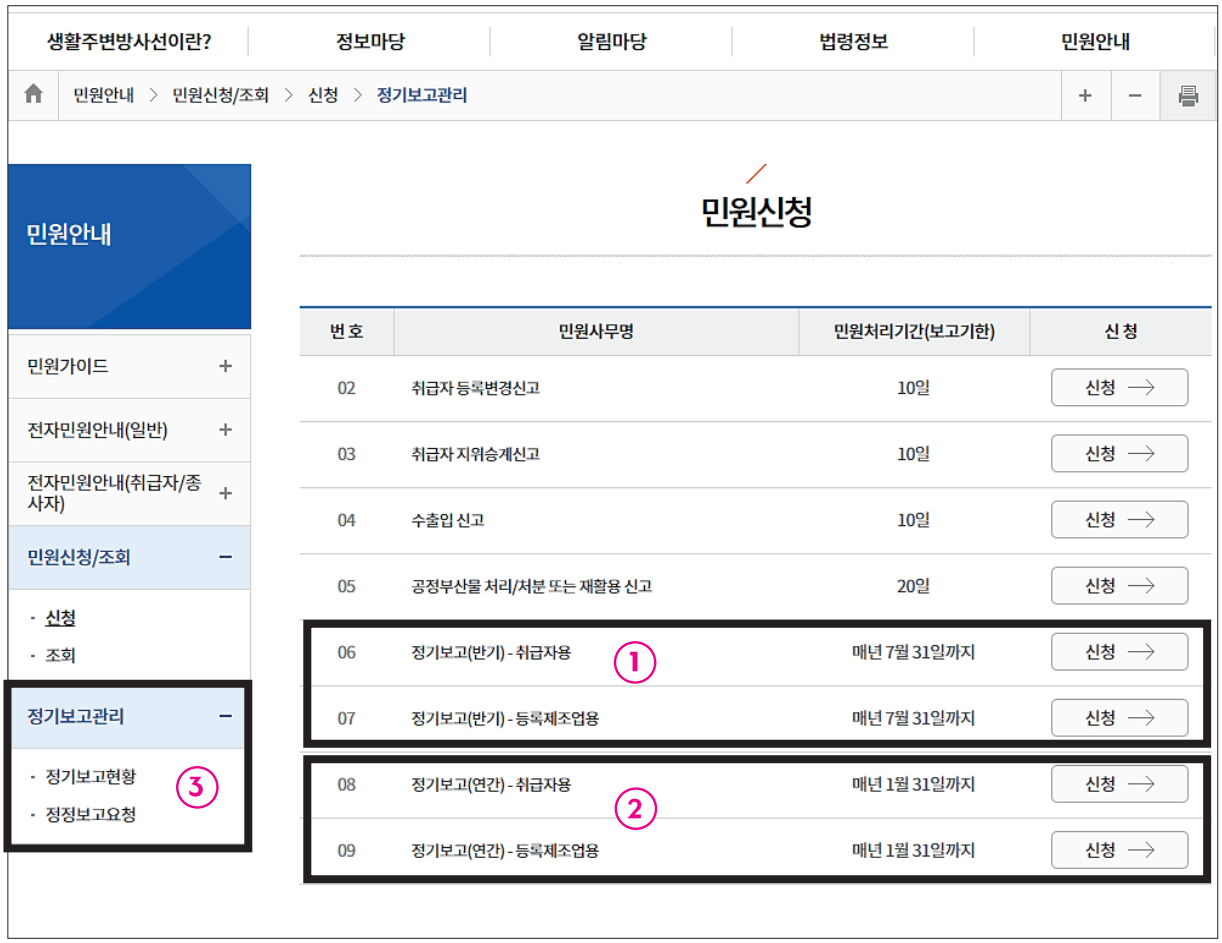

4-4-3 | 취급자 정기보고

1단계 기관정보 확인

- 로그인 사용자의 기관정보 조회됨.

① '취소' 버튼을 클릭 시 민원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

'다음' 버튼을 클릭 시 '수출입현황' 화면으로 이동

- 보고자 정보 미입력 시 '입력이 필요'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출력됨.



2단계 수출입현황 : 수출입현황 목록 화면 출력됨.

- 수출입현황 목록은 핵종, 방사능농도의 합계로 조회됨.

※ 정기보고(상반기) : 금년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생된 수출입현황 데이터 조회
정기보고(하반기) : 금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출입현황 데이터 조회

① '상세보기' 버튼 클릭 시 하단에 '수출입 상세 현황' 목록 출력
상세현황은 등록물질별 핵종 및 방사능 농도를 날짜별로 조회됨.

② '이전' 클릭 시 '기관정보확인' 화면으로 이동됨.
수출입현황을 확인 후' 다음'클릭 시 '취득현황'화면으로 이동됨.



3단계 취득현황 : 취득현황등록화면 출력됨.

- 입력대상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①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취득현황용 엑셀이 다운로드 되며, 해당 양식으로만 취득현황 업로드 가능함.

- '취득현황업로드' 클릭 시 엑셀 등록 화면이 호출됨.
- '추가' 클릭 시 취득현황목록 영역에 등록 할 수 있는 ROW 생성
- '저장' 클릭 시 취득현황목록에 입력한 내역이 저장됨.

* 취득현황 내역이 저장되어야만 취득처 불러오기가 가능힘.

②, ④ '삭제' 아이콘을 클릭 시 해당 ROW가 삭제됨.

③ '취득처 불러오기' 클릭 시 취득현황의 취득처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입력 ROW가 생성됨.

* 취득현황의 취득구분이 국내 구매 또는 증여건에 대해 취득처 정보를 입력함.

* 취득구분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다음'클릭하여 '판매현황' 탭으로 이동

⑤ '이전' 클릭 시 '수출입현황' 화면으로 이동,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판매현황' 화면으로 이동됨.

* 입력대상건이 없을 경우 취득현황의 ROW 삭제 후 '다음' 클릭 시 판매현황으로 이동



4단계 판매현황 : 판매 현황 등록 화면이 출력됨

- 입력대상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①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판매현황용 엑셀이 다운로드 다운로드 되며, 해당 양식으로만 판매현황 업로드 가능함.

-'판매현황업로드' 클릭 시 엑셀 등록 화면이 호출됨

-'추가' 클릭 시 판매현황목록 영역에 등록 할 수 있는 ROW가 생성됨.

-'저장' 클릭 시 판매현황목록에 입력한 내역이 저장됨.

* 판매현황 내역이 저장되어야만 판매처 불러오기가 가능힘.

②, ④ '삭제' 아이콘을 클릭 시 해당 ROW가 삭제됨

③ 판매현황저장 완료 후 '판매처 불러오기' 클릭 시 판매처가 자동등록 되며 입력 ROW가 생성됨

⑤ '이전' 클릭 시 '취득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보관현황' 화면으로 이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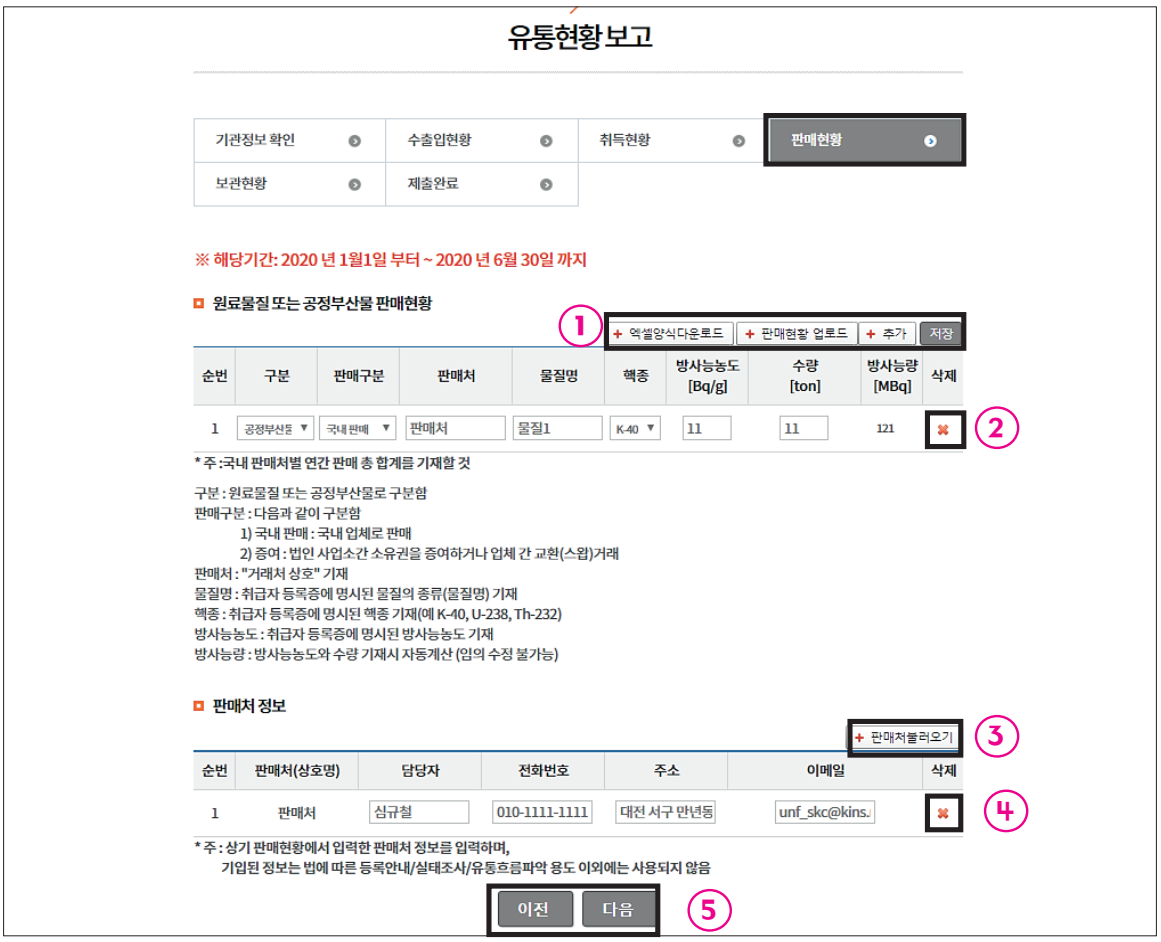

5단계 보관현황 : 보관현황 등록화면이 출력됨.

- 입력대상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①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보관현황용 엑셀이 다운로드 되며, 해당 양식으로만 보관현황 업로드 가능함.

-'보관현황업로드' 클릭 시 엑셀 등록 화면이 호출됨

-'추가' 클릭 시보관현황 목록 영역에 등록 할 수 있는 ROW가 생성됨.

② '삭제' 아이콘을 클릭 시 해당 ROW가 삭제됨

③ '이전' 클릭 시 '판매 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안전조치현황' 화면으로 이동됨.



6단계 안전조치현황 1/2 [상반기 보고 시 해당 사항 없음]

- 안전조치현황 등록화면이 출력되며, 입력대상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임.

① 단순유통업체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 하고 제출 버튼 클릭
(체크박스 선택 시 안전조치현황 미 입력)

②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분석결과용 엑셀이 다운로드 되며, 해당양식으로만 분석결과 엑셀 업로드가 가능함.

- '작업자업로드' 클릭 시 엑셀 등록 화면이 호출됨.
- '추가' 클릭 시 분석결과 목록 영역에 등록 할 수 있는 ROW가 생성됨.

②, ⑤ '삭제' 아이콘을 클릭 시 해당 ROW가 삭제됨

④ '추가' 클릭 시 의사소견유무 목록 영역에 등록할 수 있는 ROW가 생성됨.



6단계 안전조치현황 2/2 [상반기 보고 시 해당 사항 없음]

- 기구 장치 활 등 조치, 정보제공수행 여부를 O, X로 선택하며, 입력대상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임.

⑥ '이전' 클릭 시 '보관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제출 완료' 화면으로 이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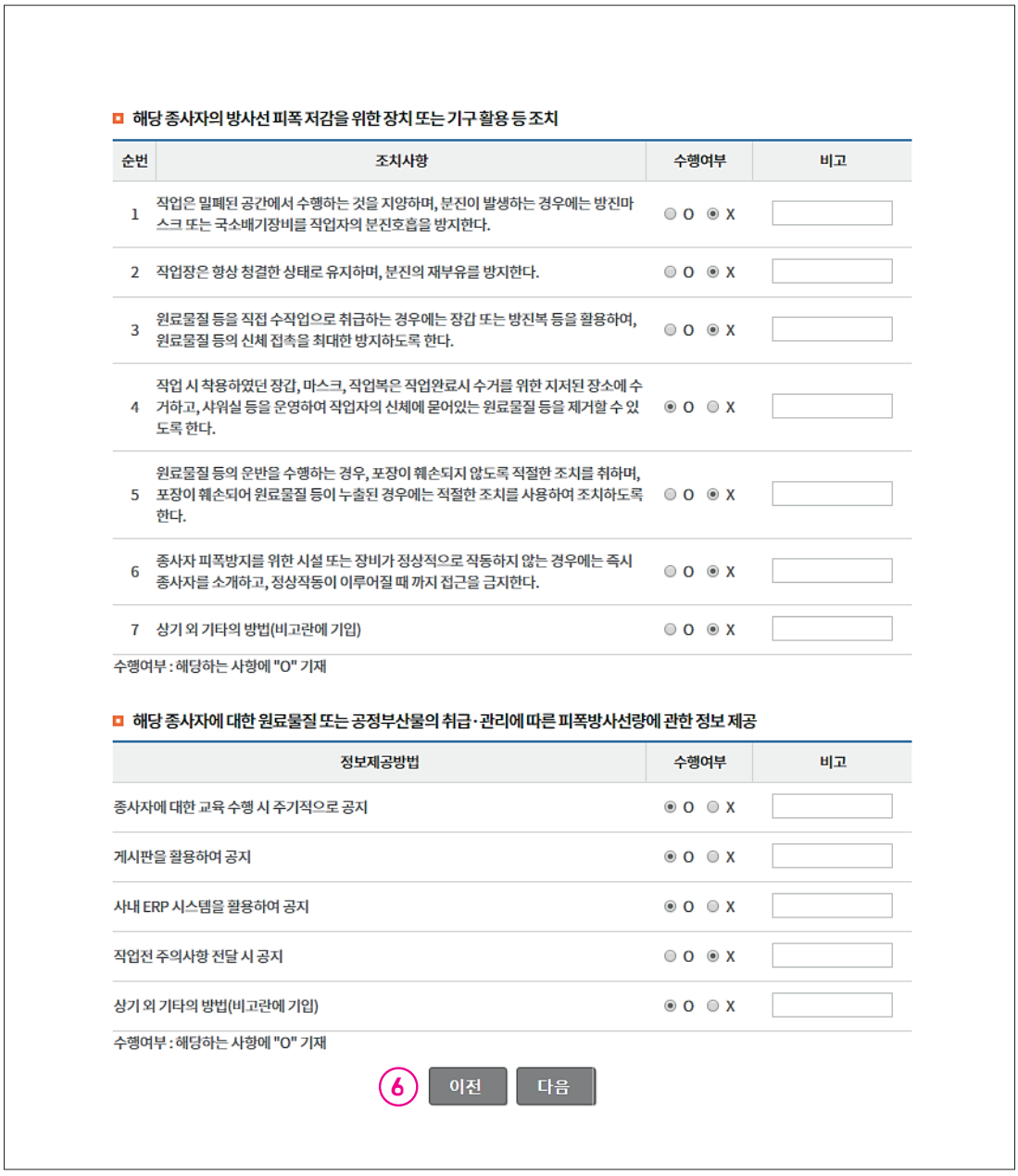

■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순번	조치사항	수행여부	비고
1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며,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또는 국소배기장비를 작업자의 분진호흡을 방지한다.	○ O ◉ X	
2	작업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분진의 재부유를 방지한다.	○ O ◉ X	
3	원료물질 등을 직접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갑 또는 방진복 등을 활용하여, 원료물질 등의 신체 접촉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 O ◉ X	
4	작업 시 착용하였던 장갑, 마스크, 작업복은 작업완료시 수거를 위한 지저된 장소에 수거하고, 샤워실 등을 운영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묻어있는 원료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O ○ X	
5	원료물질 등의 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포장이 훼손되어 원료물질 등이 누출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O ◉ X	
6	종사자 피폭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를 소개하고, 정상작동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접근을 금지한다.	○ O ◉ X	
7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 O ◉ X	

수행여부 : 해당하는 사항에 "O" 기재

■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제공방법	수행여부	비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행 시 주기적으로 공지	◉ O ○ X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지	◉ O ○ X	
사내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	◉ O ○ X	
작업전 주의사항 전달 시 공지	○ O ◉ X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 O ○ X	

수행여부 : 해당하는 사항에 "O" 기재

⑥ 이전 다음

7단계 제출 완료 [상반기 정기보고]

- 탭별 입력한 정보가 보고서형식으로 출력됨.

① 입력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시 해당 보고서 형태가 엑셀파일로 생성되며 상반기 정기보고 보고가 완료됨.

※ 보고 기간에는 수정 가능 : 당해 7.1 ~ 7.3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상세 현황

순번	구분	수출입 날짜	수출입 구분	국가명	물질명	핵종	방사능농도 [Bq/g]	방사능량 [MBq]
1	원료물질	2017.01.04	수입	중국	칼륨화합물	K-40	15.3	275.4
2	원료물질	2017.04.06	수입	중국	칼륨화합물	K-40	15.3	183.6
3	원료물질	2017.05.11	수입	중국	칼륨화합물	K-40	15.3	183.6
4	원료물질	2017.06.27	수입	중국	칼륨화합물	K-40	15.3	244.8
5	원료물질	2017.03.03	수입	중국	칼륨화합물	K-40	15.3	122.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국내 취득현황

순번	구분	취득구분	취득처	물질명	핵종	방사능농도 [Bq/g]	수량 [ton]	방사능량 [MBq]
1	공정부산물	국내 구매	취득처1	원료물질1	K-40	11	11	121

취득처 정보

순번	취득처(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1	취득처1	심규철	010-1111-1111	대전 서구	unf_skc@kins.re.kr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국내 판매현황

순번	구분	판매구분	판매처	물질명	핵종	방사능농도 [Bq/g]	수량[ton]	방사능량 [MBq]
1	공정부산물	국내 판매	국내판매처	원료물질2	K-40	11	11	121

판매처 정보

순번	판매처(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1	국내판매처	심규철	010-1111-1111	대전 서구	unf_skc@kins.re.kr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보관현황

순번	구분	물질명	핵종	방사능농도 [Bq/g]	수량[ton]	방사능량[MBq]
1	공정부산물	원료물질3	K-40	11	11	121



7단계 제출 완료 [하반기 정기보고]

- 탭별 입력한 정보가 보고서형식으로 출력됨.

① 입력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시 해당 보고서 형태가 엑셀파일로 생성되며 하반기 정기보고 보고가 완료됨.

.※ 보고 기간에는 수정 가능 : 익년 1.1 ~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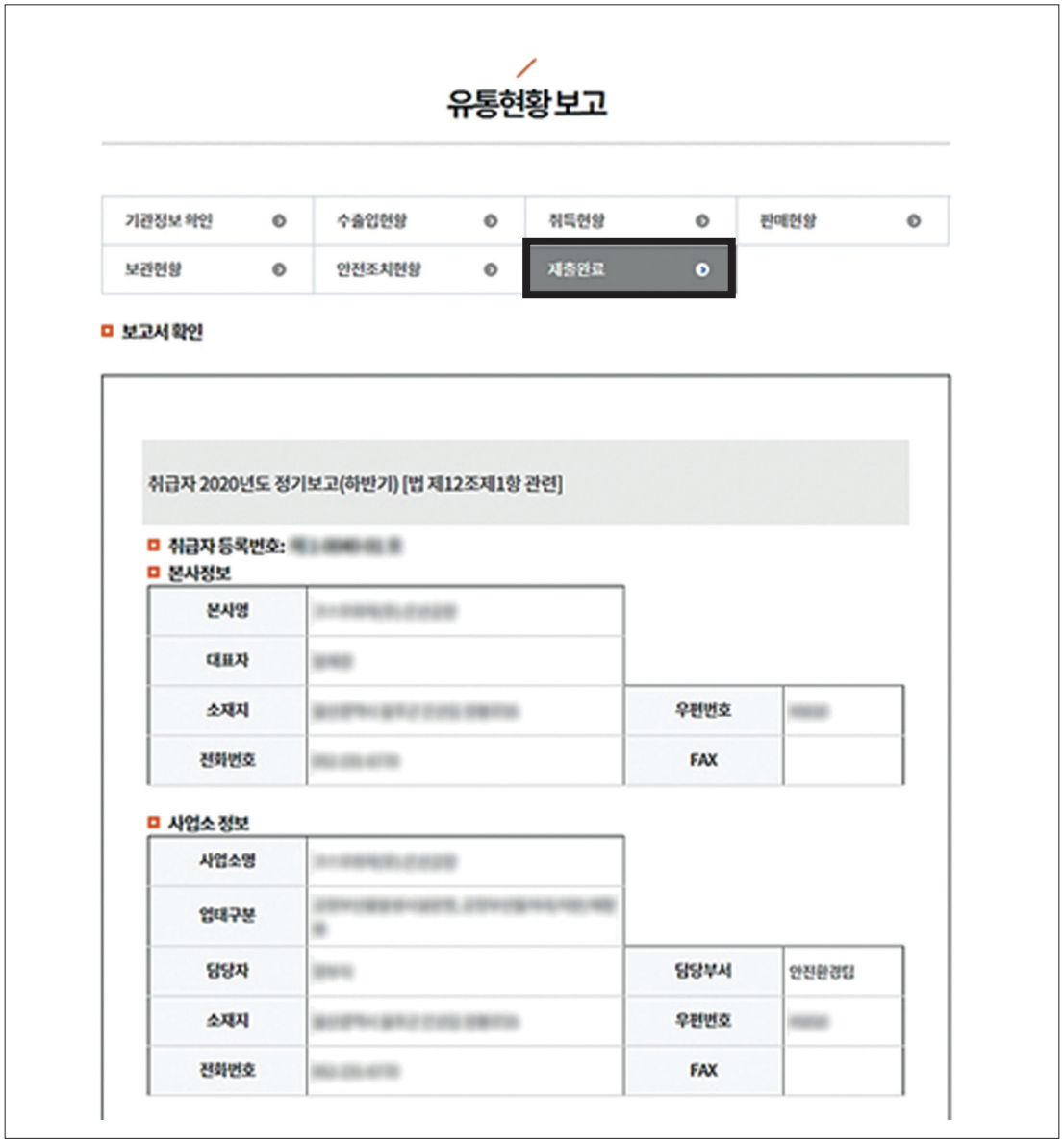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의조사 및 분석결과

순번	작업자 성명	연간 피폭방사선량 [mSv/yr]
1	홍길동	11

건강진단 결과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 유무

순번	작업자 성명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유무
1	홍길동	X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순번	조치사항	수행여부	비고
1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며,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또는 국소배기장비를 작업자의 분진호흡을 방지한다.	X	
2	작업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분진의 재부유를 방지한다.	X	
3	원료물질 등을 직접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갑 또는 방진복 등을 활용하여, 원료물질 등의 신체 접촉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X	
4	작업 시 착용하였던 장갑, 마스크, 작업복은 작업완료시 수거를 위한 지지된 장소에 수거하고, 샤워실 등을 운영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묻어있는 원료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O	
5	원료물질 등의 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포장이 훼손되어 원료물질 등이 누출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X	
6	종사자 피폭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를 소개하고, 정상작동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접근을 금지한다.	X	
7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X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제공방법	수행여부	비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행 시 수기식으로 공지	O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지	O	
사내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	O	
작업전 주의사항 전달 시 공지	X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O	

1 취소 제출

4-4-4 | 등록제조업자 정기보고

1단계 기관정보 확인

- 정기보고 기관정보 내역이 조회되며, 보고자 정보 입력란 활성화됨.

① '취소' 버튼을 클릭 시 민원신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

- '다음' 버튼을 클릭 시 '취득현황' 화면으로 이동

* 보고자 정보 미입력 시 '입력이 필요'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출력됨.



2단계 취득현황 : 취득현황 등록화면 출력됨.

- 입력대상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①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취득현황용 엑셀이 다운로드 되며, 해당 양식으로만 취득현황 업로드 가능함.

- '취득현황업로드' 클릭 시 엑셀을 등록하는 화면이 호출됨.
- '추가' 클릭 시 취득현황목록 영역에 등록 할 수 있는 ROW 생성
- '저장' 클릭 시 취득현황목록에 입력한 내역이 저장됨.

* 취득현황 내역이 저장되어야만 취득처 불러오기가 가능함.

②, ④ '삭제' 아이콘을 클릭 시 해당 ROW가 삭제됨.

③ '취득처 불러오기' 클릭 시 취득현황의 취득처가 자동으로 등록되며 입력 ROW가 생성됨.

* 취득현황의 취득구분이 국내 구매 또는 증여건에 대해 취득처 정보를 입력함.

* 취득구분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다음'클릭하여 '판매현황' 탭으로 이동

⑤ '이전' 클릭 시 '기관정보확인' 화면으로 이동,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수출입현황' 화면으로 이동됨.

* 입력대상건이 없을 경우 취득현황의 ROW 삭제 후 '다음' 클릭시 수출입현황으로 이동



3단계 수출입현황 : 수출입 현황 목록이 화면이 출력됨.

- 조회된 수출입현황 내용을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함.

※ 정기보고(상반기) : 금년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생된 수출입현황 데이터 조회
정기보고(하반기) : 금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출입현황 데이터 조회

① '이전' 버튼 클릭 시 '취득현황' 화면으로 이동

- 수출입현황내역을 확인 하고 '다음' 클릭시 .제조/판매/보관현황탭화면으로 이동됨



4단계 제조/판매/보관 현황 : 제조/수출입/판매 등록 화면이 출력됨.

- 입력대상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①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제조/판매/보관현황용 엑셀이 다운로드 되며, 해당양식으로만 제조/판매/보관현황 엑셀업로드 가능함

- '현황 업로드' 클릭 시 작성된 엑셀파일을 등록하는 화면이 호출됨.
- '추가'클릭 시 목록 영역에 등록할 수 있는 데이터 ROW가 생성됨

② 목록영역의 해당 ROW가 삭제됨

③ '이전' 클릭 시 '수출입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안전조치현황' 화면으로 이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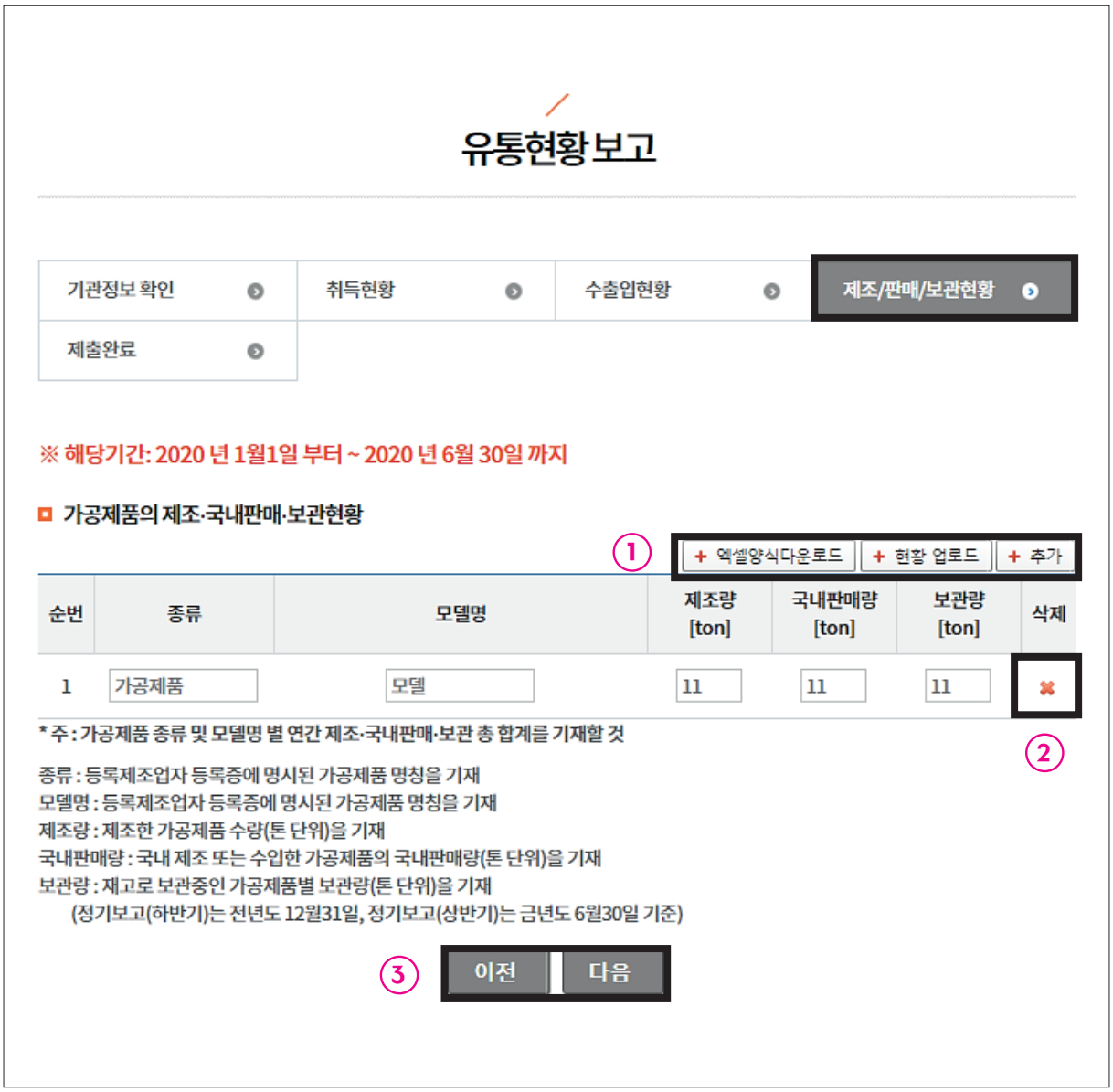

5단계 안전조치현황 1/2 [상반기 보고 시 해당 사항 없음]

- 안전조치현황 등록화면이 출력되며, 입력대상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임.

① '단순유통업체로 해당사항 없음' 체크박스 선택하면 '안전조치현황'을 미입력함.

② '엑셀양식다운로드' 클릭 시 분석결과용 엑셀이 다운로드 되며, 해당양식으로만 분석결과 엑셀 업로드가 가능함.

- '작업자업로드' 클릭 시 엑셀 등록 화면이 호출됨.

- '추가' 클릭 시 분석결과 목록 영역에 등록 할 수 있는 ROW가 생성됨.

③, ⑤ '삭제' 아이콘을 클릭 시 해당 ROW가 삭제됨

④ '추가' 클릭 시 의사소견유무 목록 영역에 등록할 수 있는 ROW가 생성됨.



5단계 안전조치현황 2/2 [상반기 보고 시 해당 사항 없음]

- 기구 장치 활용등 조치, 정보제공수행 여부를 O, X로 선택하며, 입력대상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임.

⑥ '이전' 클릭 시 '제조/판매/보관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다음' 클릭 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며 '제출 완료' 화면으로 이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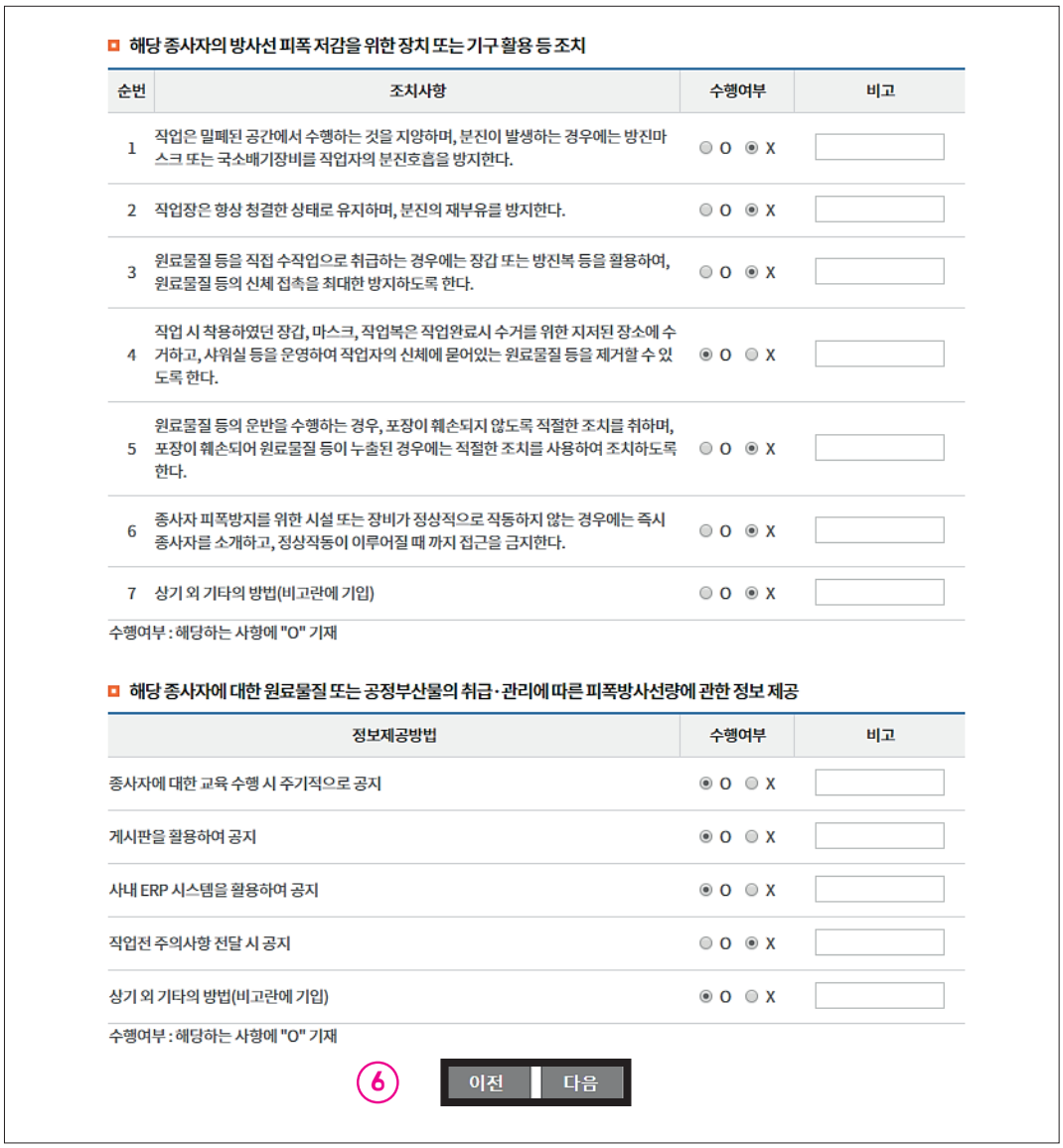

■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순번	조치사항	수행여부	비고
1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며,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또는 국소배기장비를 작업자의 분진호흡을 방지한다.	○ O ◉ X	
2	작업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분진의 재부유를 방지한다.	○ O ◉ X	
3	원료물질 등을 직접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갑 또는 방진복 등을 활용하여, 원료물질 등의 신체 접촉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 O ◉ X	
4	작업 시 착용하였던 장갑, 마스크, 작업복은 작업완료시 수거를 위한 지저된 장소에 수거하고, 샤워실 등을 운영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묻어있는 원료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O ○ X	
5	원료물질 등의 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포장이 훼손되어 원료물질 등이 누출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O ◉ X	
6	종사자 피폭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를 소개하고, 정상작동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접근을 금지한다.	○ O ◉ X	
7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 O ◉ X	

수행여부 : 해당하는 사항에 "O" 기재

■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제공방법	수행여부	비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행 시 주기적으로 공지	◉ O ○ X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지	◉ O ○ X	
사내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	◉ O ○ X	
작업전 주의사항 전달 시 공지	○ O ◉ X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 O ○ X	

수행여부 : 해당하는 사항에 "O" 기재

⑥ 이전 다음

6단계 : 제출 완료 [상반기 정기보고]

- 각 화면별로 입력한 내역이 보고서 형태로 조회됨.

① '취소' 클릭 시 '보관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제출' 클릭 시 해당 보고서 형태의 내역이 엑셀 파일로 생성되며 정기보고가 보고 완료됨.

※ 보고 기간에는 수정 가능 당해 7.1 ~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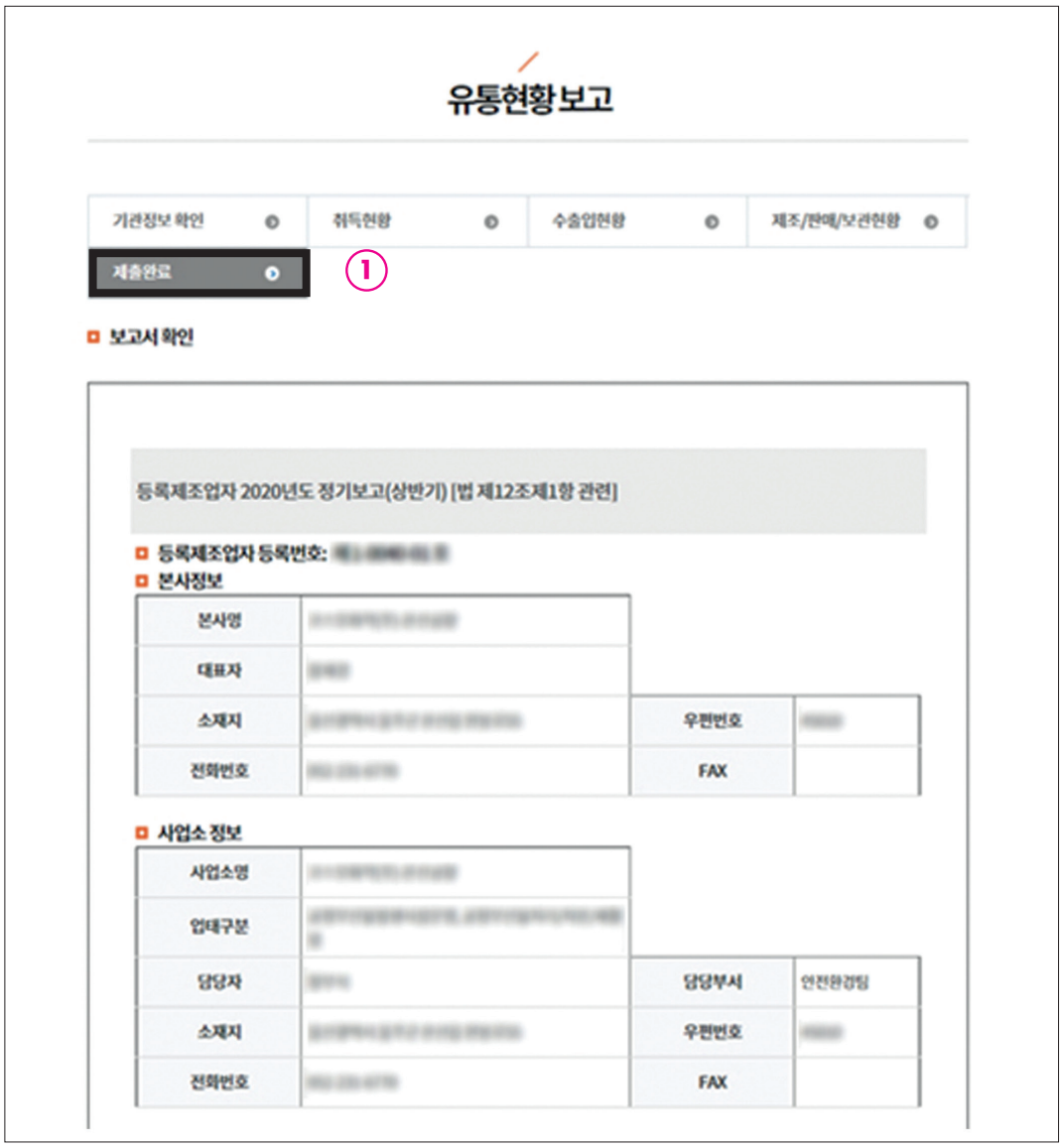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국내 취득현황

순번	구분	취득구분	취득처	물질명	핵종	방사능농도 [Bq/g]	수량 [ton]	방사능량 [MBq]
1	공정부산물	국내 구매	취득처1	물질1	K-40	11	11	121

취득처 정보

순번	취득처(상호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1	취득처1	심규철	010-1111-1111	대전 서구 만년동	unf_skc@kins.re.kr

가공제품의 수출입 현황

순번		수출입 구분		종류	모델명	수량 [ton]

가공제품의 수출입 상세 현황

순번	수출입 날짜	수출입 구분	국가명	종류	모델명	수량 [ton]

가공제품의 제조·국내판매·보관 현황

순번	종류	물질명	제조량[ton]	국내판매량[ton]	보관량[ton]
1	가공제품	모델	11	11	11

① 취소 제출

6단계 : 제출 완료 [하반기 정기보고]

- 각 화면별로 입력한 내역이 보고서 형태로 조회됨.

① '취소' 클릭 시 '안전조치현황' 화면으로 이동하며, '제출' 클릭 시 해당 보고서 형태의 내역이 엑셀 파일로 생성되며 정기보고(하반기)가 보고 완료됨.

※ 보고 기간에는 수정 가능

- 하반기 수정 기간 : 익년 1.1 ~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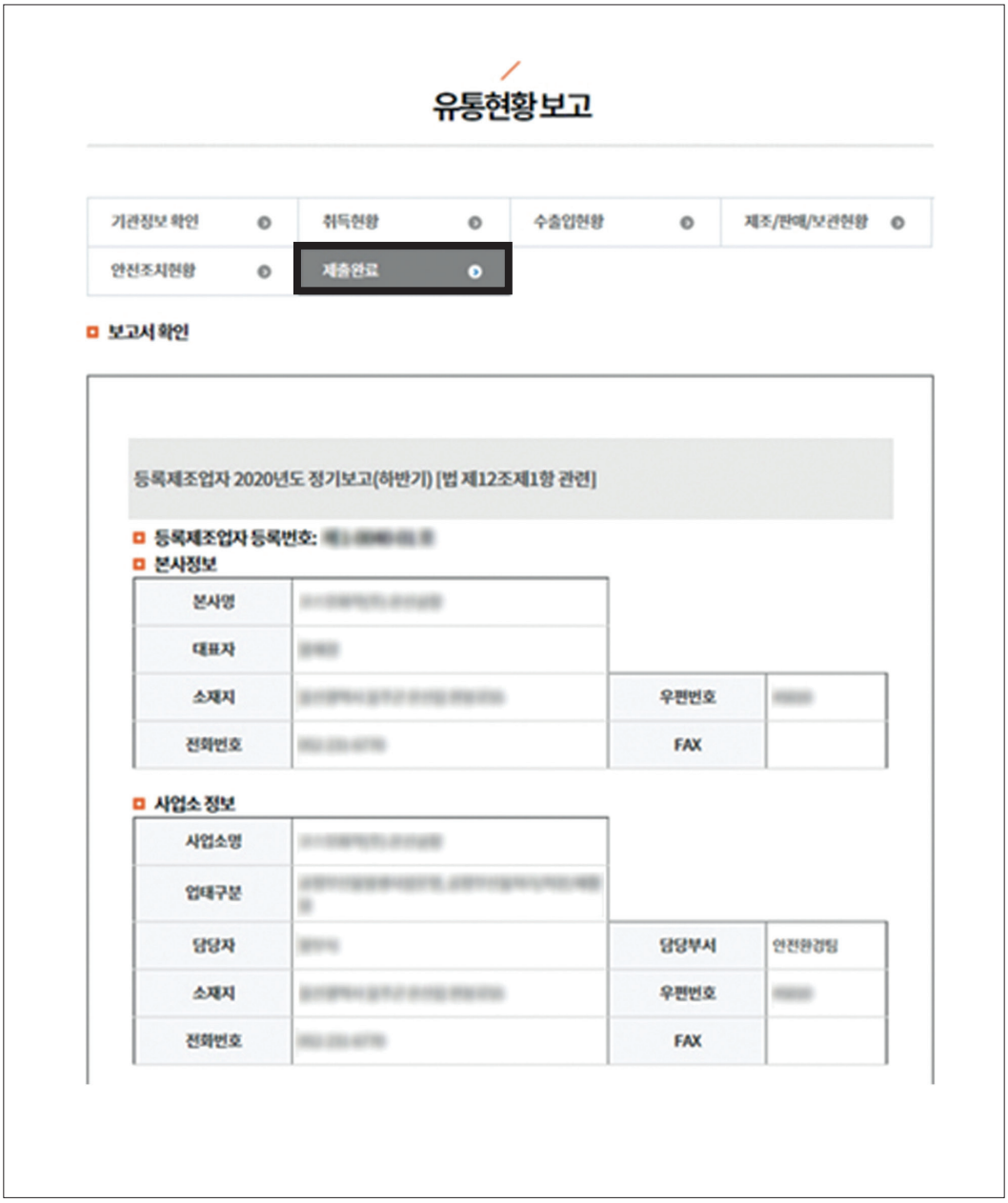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가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의조사 및 분석결과

순번	작업자 성명	연간 피폭방사선량 [mSv/yr]
1	홍길동	11

건강진단 결과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사의 소견 유무

순번	작업자 성명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유무
1	홍길동	X

해당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장치 또는 기구 활용 등 조치

순번	조치사항	수행여부	비고
1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며,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또는 국소배기장비를 작업자의 분진호흡을 방지한다.	X	
2	작업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며, 분진의 재부유를 방지한다.	X	
3	원료물질 등을 직접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갑 또는 방진복 등을 활용하여, 원료물질 등의 신체 접촉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X	
4	작업 시 착용하였던 장갑, 마스크, 작업복은 작업완료시 수거를 위한 지지된 장소에 수거하고, 사워실 등을 운영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묻어있는 원료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O	
5	원료물질 등의 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포장이 훼손되어 원료물질 등이 누출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X	
6	종사자 피폭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종사자를 소개하고, 정상작동이 이루어질 때 까지 접근을 금지한다.	X	
7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X	

해당 종사자에 대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에 따른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제공방법	수행여부	비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행 시 주기적으로 공지	O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지	O	
사내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	O	
작업전 주의사항 전달 시 공지	X	
상기 외 기타의 방법(비고란에 기입)	O	

1 취소 제출

4-4-5 | 정기보고 현황

[민원안내] → 정기보고 관리 → 정기보고현황]



정기보고현황 화면 1/2 [반기보고현황]

① 보고연도 : 보고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 조회됨.

구분 : 정기보고(반기) 또는 정기보고(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박스 조회됨.

보고상태 : 보고완료 또는 미보고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박스 조회됨.

검색 :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시 목록 영역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

② 해당 데이터의 ROW를 클릭하면 '정기보고상세현황' 팝업창 호출됨.



정기보고현황 화면 2/2 [연간보고현황]

① 보고연도 : 보고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 조회됨.
구분 : 정기보고(반기) 또는 정기보고(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박스 조회됨.
보고상태 : 보고 완료 또는 미보고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박스 조회됨.
검색 :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시 목록 영역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
② 해당 데이터의 ROW를 클릭하면 '정기보고상세현황' 팝업창 호출됨.



4-4-6 | 정정보고요청

[민원안내] → 정기보고 관리 → 정정보고요청]

- 정정보고 가능 기간 : 상반기 (7.1 ~ 7.31), 하반기 (1.1 ~ 1.31)

① 보고연도 : 보고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박스 조회됨.

구분 : 정기보고(반기) 또는 정기보고(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박스 조회됨.

보고상태 : 정정보고상태(승인, 대기, 반려, 정정완료)를 선택할 수 있음.

검색 :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 시 목록 영역에 해당 데이터를 출력

② 선택 영역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정정보고요청'을 클릭하면 화살표 아래와 같이'정정보고요청'팝업 화면이 호출됨.

③ 정정보고상태가 '승인' 일 때 '정정보고등록'이 활성화되며, '정정보고등록'을 클릭하면 '정정보고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④ 정정보고상태가 '반려' 일 때 '반려사유확인'이 활성화 되며, '반려사유확인'을 클릭하면 반려사유에 대한 팝업 화면이 호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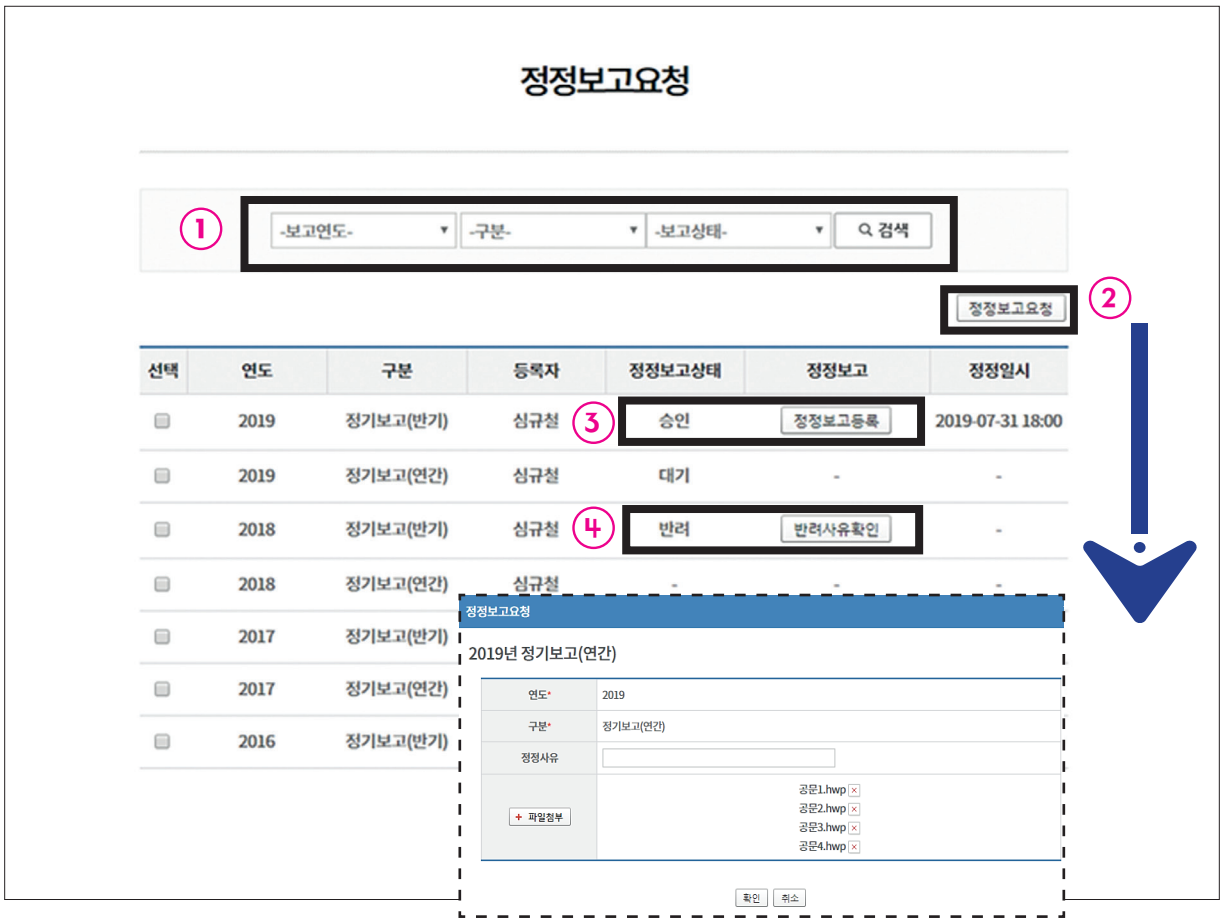

정정보고요청 팝업 화면 설명

① '파일첨부' 클릭 하면 파일 등록화면이 호출됨.

② 등록한 파일을 해당 ROW에서 삭제 함.

③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 및 첨부파일이 저장되고 팝업창이 닫히며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는 삭제되며, 팝업창이 닫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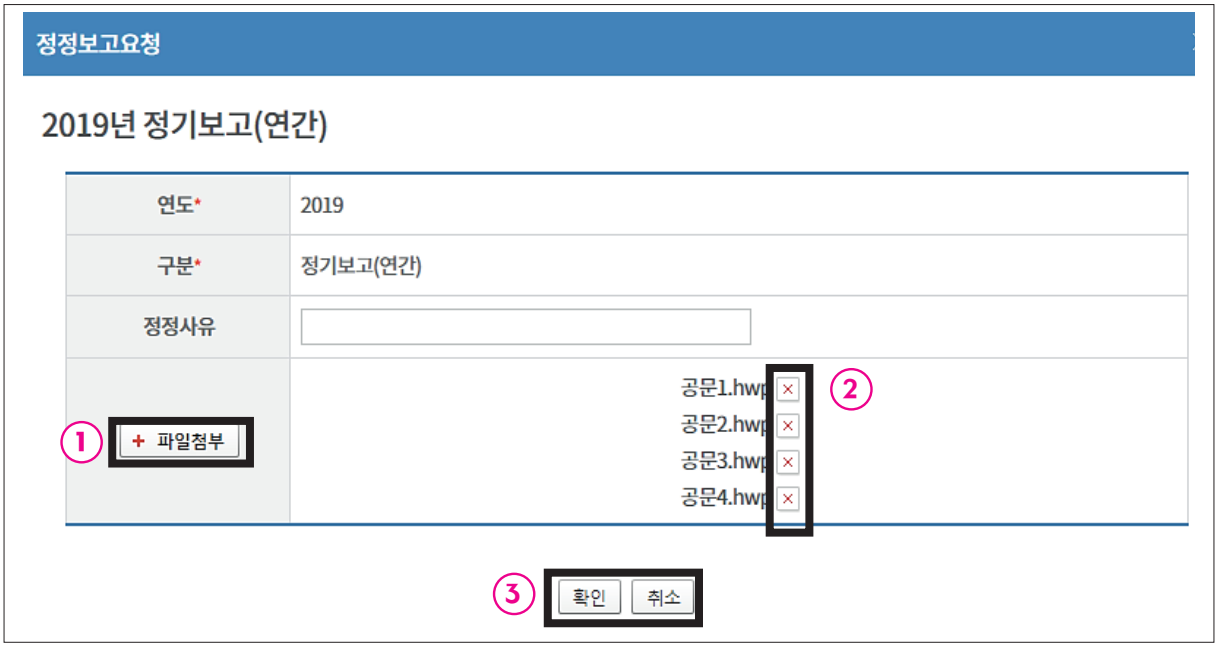

민원안내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PART 02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1.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2. 라돈측정기 자가측정 매뉴얼

PART 02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01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1-1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우편대여서비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확인등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기술지원센터(1811-8336)를 통해 대리신청 진행 가능하며, 대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청서 제출	②측정기 발송	③자가측정(3~5일)	④측정기 회수
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KINS →신청인 (측정매뉴얼 결과서 + 밀봉비닐 포함)	신청인 (측정+측정결과 작성)	신청인→KINS

CISRAN (https://cisran.kins.re.kr) 메인화면 상단의 '라돈측정기우편대여서비스'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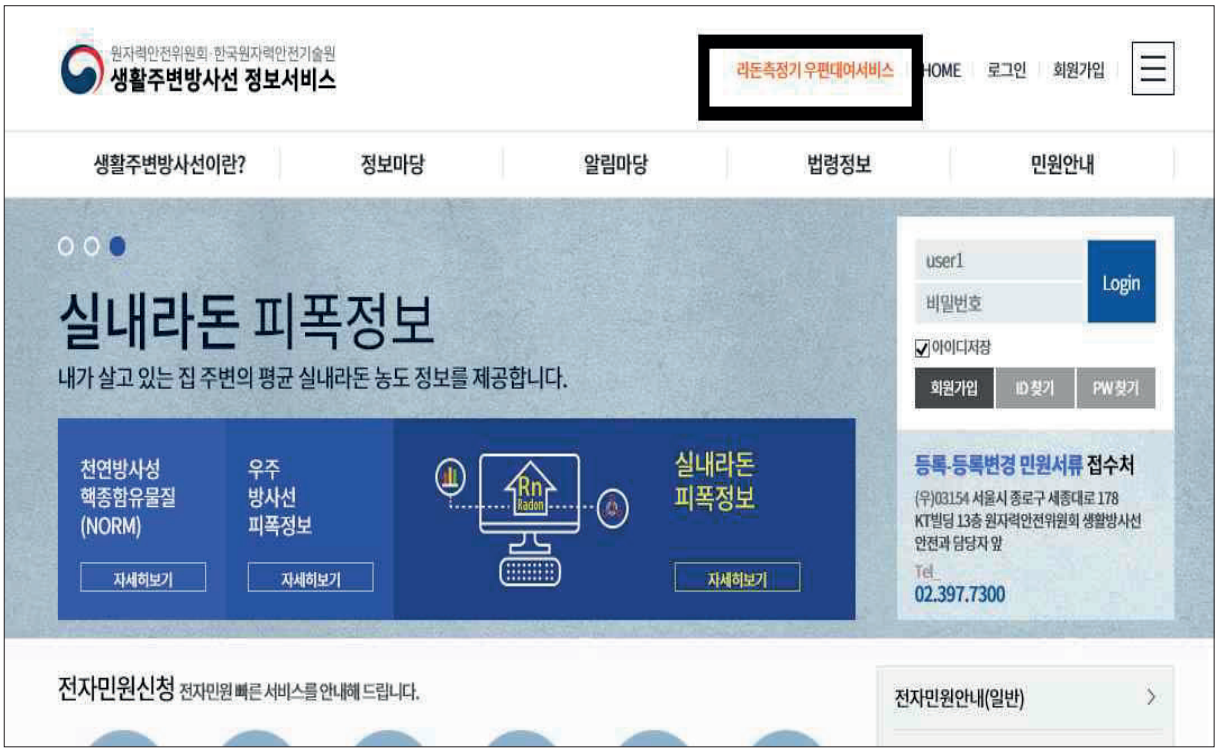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화면

- 우편대여서비스는 휴대폰인증을 통해 접수가 가능함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있어야 합니다.

① 우편대여서비스 관련 안내사항(필독)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비동의 체크 : '동의합니다'선택 후

③ 휴대폰인증 선택
- [접수확인] 선택 시 기접수확인 가능 (휴대폰인증 필수)

④ 우편대여서비스 자주묻는 질문, 라돈측정기 자가 측정 매뉴얼을 다운로드, 우편대여서비스 안내 동영상을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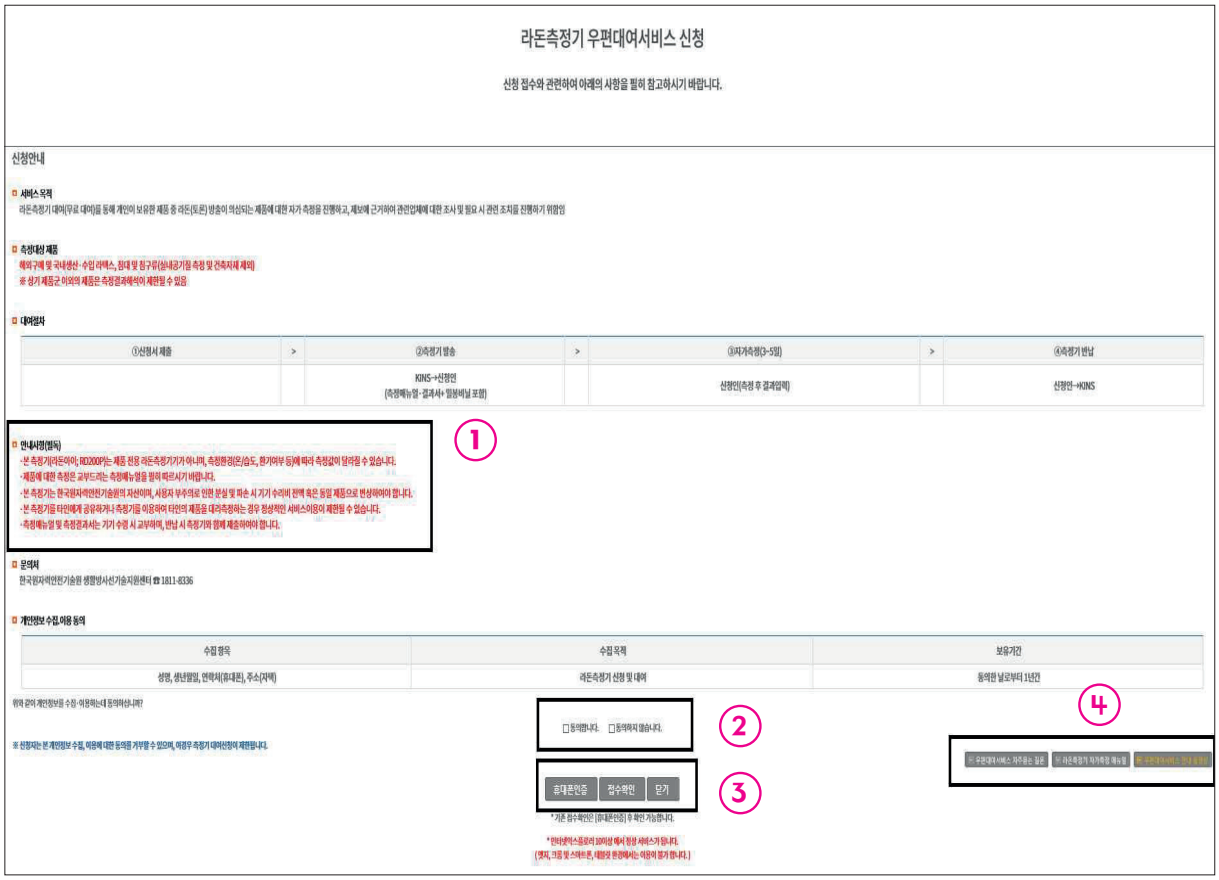

휴대폰 본인 인증

①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메인 화면 ②번란의 '휴대폰 인증' 버튼 클릭

② 팝업창으로 휴대폰 인증페이지가 표시되면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 → 이용동의, 약관동의 등 체크 → 시작하기 클릭

③ QR인증, 간편인증 또는 문자인증 중 선택 후 신청을 계속 진행

④ 개인정보 입력사항을 입력 후 보안 문자에 표시된 숫자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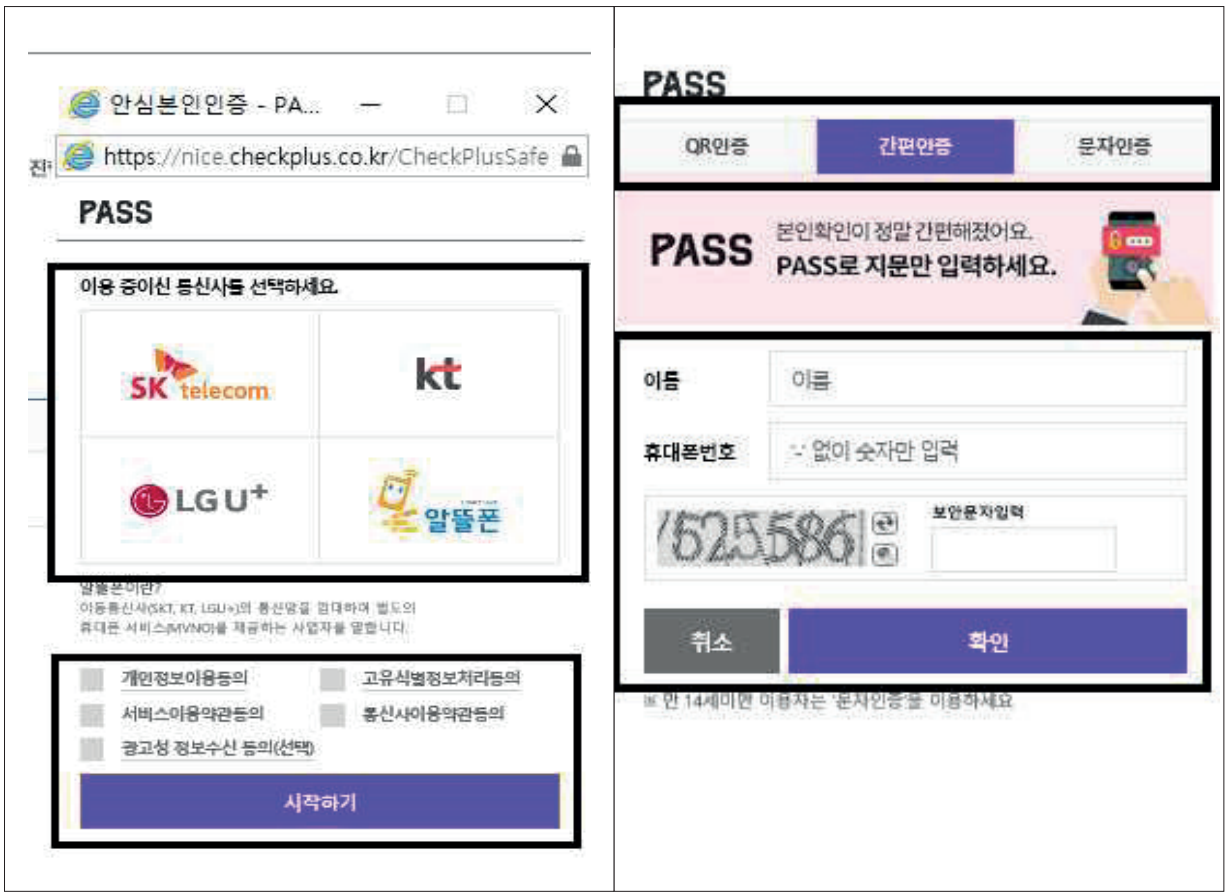

주소입력

① 우편번호 찾기를 클릭 후 주소입력

② 주소입력 후 '제출' 클릭 → 신청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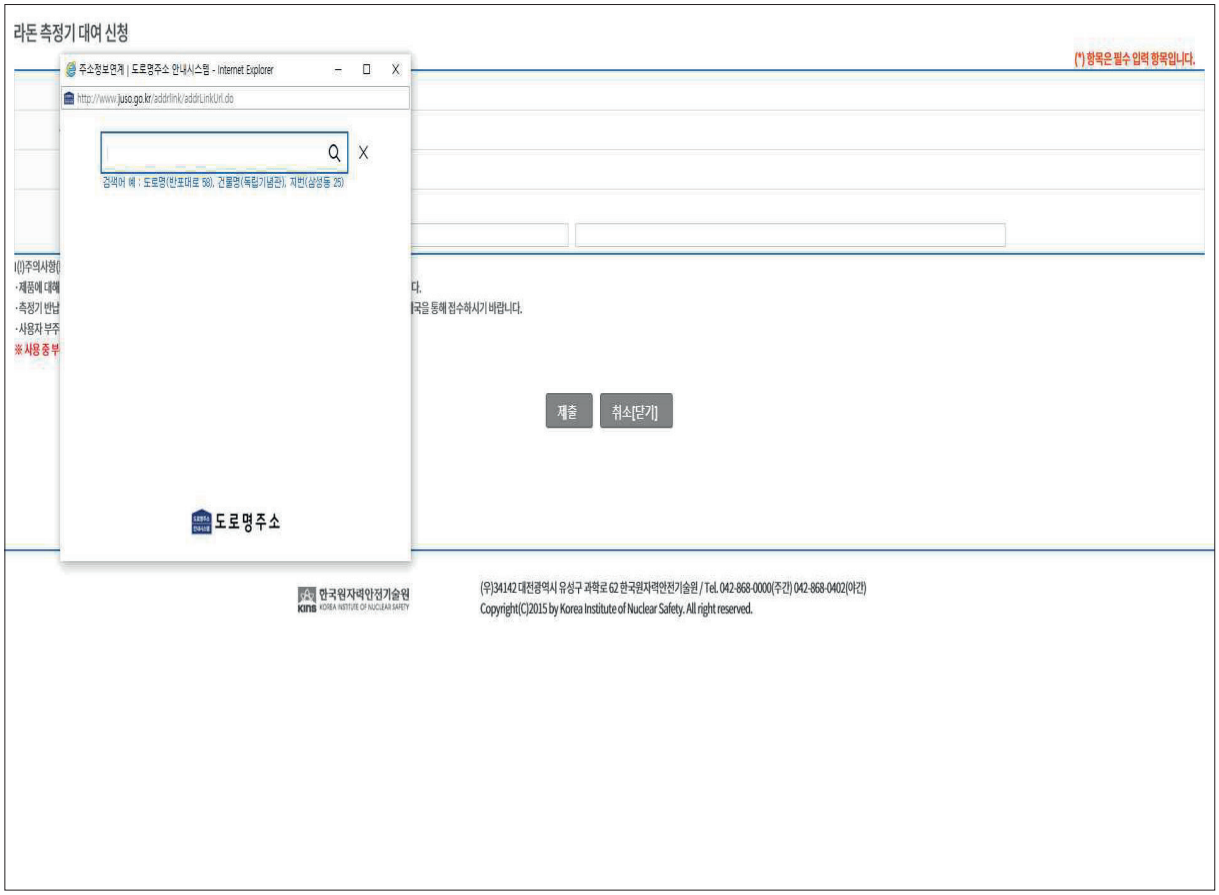

PART 02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02

라돈측정기 자가측정 매뉴얼

2-1 라돈측정기 자가측정 매뉴얼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측정기 수령 후 1주일 이내 회송을 부탁드립니다.

※ 동영상 매뉴얼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cisran kins 채널 참고

① 우편대여 상자 내용물 확인

- 라돈측정기 1 대, 밀봉 비닐 1 개, 매뉴얼/결과서 등

※ 측정기 부재 등 이상 있는 경우 ☎ 1811-8336 문의

② 측정 준비





- **환기 :**
  - ▶ 라돈은 천연방사성핵종이므로 실내 공기 중에도 존재하며 이는 제품의 라돈측정 시 방해요소
  - ▶ 정확한 측정을 위해 30 분 이상 환기 후 측정
- **차폐 :**
  - ▶ 측정 시 바닥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 ▶ 동봉된 비닐을 측정제품 아래에 설치
- **밀폐 :**
  - ▶ 환기 후 공기 흐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 ▶ 창문 및 방문을 닫고 측정

③ 라돈측정기 작동방법

1. 전원연결





2. 지시창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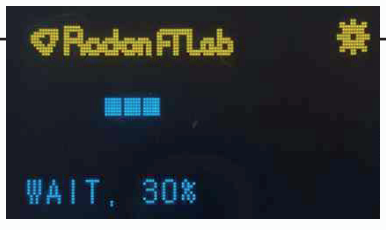



- 전원연결 후 측정기 지시창 아래의 숫자가 100 %가 되면 계측 자동 시작
- 계측 시작까지 약 10 분 소요되며, 측정값은 10 분 단위로 표시

※ 이상 있는 경우 전원선 분리 후 재연결하고, 이상 지속발생 시 ☎1811-8336 문의

※ 배경준위 : 자연방사선에 의해 기존에 실내에 존재하는 방사선량

④ 자가측정

- 배경준위 측정 :
  - ▶ 제품과 동일 높이에서 50 cm 이상 이격하여 30 분~1 시간 측정
- 제품 측정 :
  - ▶ 전원차단 및 재연결 후 제품상단에 측정기를 위치시켜 30 분~1 시간 측정

배경준위 측정	측정 제품 측정
	

·비닐이 제품 아래에 위치

※ 측정 시 주의사항

- 제품 구매 당시와 같은 상태(제품 분해X)로 측정
- 다른 제품 계측할 경우, 반드시 전원차단 후 재연결
- 측정값이 **1,000 Bq/m3 이상이면, 1 시간 이상 계측하지 말 것**이며, 높게 측정된 제품 위에 측정기를 **장시간 방치하지 않을 것**을 권장
- **측정대상 제품**은 해외구매 및 국내생산·수입 라텍스, 침대 및 침구류이며 상기 제품군 이외의 제품은 측정결과 해석이 제한될 수 있음 (실내공기질 측정 및 건축자재 등은 대상에서 제외)

⑤ 측정결과 분석 및 결과서 작성

- 배경준위 : 배경준위가 4 pCi/L(≈148 Bq/m3) 이상일 경우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할것을 권장
- 제품 : 측정결과서 작성 및 회송 후 측정결과 분석하여 유선안내 예정
- 결과서 작성 : 동봉된 측정결과서 양식에 따라 기입, 반송 시 반드시 동봉

ex)

제품	측정값 (배경준위)	100	Bq/m³ pCi/l	측정값	200	Bq/m³ pCi/l
	제품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 길동침대(k01-01)		**제품종류(매트리스등) :** 매트리스		**제조사명 :** 홍길동 침대
		구매처 : 홈길동침대oo대리점		**제조년도 :** 2015		**구입년도 :** 2017

⑥ 라돈측정기 회송용 박스 포장 및 회송 절차

- 회송용 박스 포장 :

▶ 라돈측정기 : 최초 포장 상태와 동일하게 포장(에어캡 필수)

▶ 밀봉 비닐 : 측정 시 사용한 밀봉 비닐은 가정에 보관하였다가 측정제품이

- 정상제품인 경우: 자체 폐기

- 부적합제품인 경우: 제품 보관 시 사용

▶ 절차서/결과서 등 : 최초 포장 상태와 동일하게 포장

포장예시

박스 내부	박스 외부
	

- 회송절차(CJ대한통운 접수) :

▶ 온라인 : CJ대한통운 홈페이지(https://www.cjlogistics.com) → 택배예약 → 개인택배 예약

→ 정보입력 및 예약신청

[상품명 : 라돈측정기, 상품가격 : 200,000, 포장수량 : 1, 부피 : 극소, 결재방식 : 착불]

▶ 유선 : CJ대한통운 콜센터 문의(☎ 1588-1255)

신청인이 결재할 필요 없이 반품형태로 진행하며 아래의 주소로 발송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34142),

▶ ☎ 042) 1811-8336

⑦ 주의사항

- 분실 및 훼손 시:

▶ 동봉된 라돈측정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산이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훼손 시 기기수리비 전액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

- 목적 외 이용 시:

  ▶ 신청인 이외의 개인·집단에게 라돈측정기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대리로 측정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⑧ 기타 문의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문의 (☎ 1811-8336)

부록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2. 생활주변방사선 관계 법령 및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민원

부록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방사선 농도관련 문의

문의사항	답변내용
- 방사능 농도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출업체에 농도 분석 결과서를 요청하려 하는데 어떤 결과서를 요청해야 하나요?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로 인정되는 시험 성적서는 다음과같습니다. 1) ISO/IEC 17025 요건을 만족하는 시험기관 또는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인정된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2) KOLAS 인정 국내 분석기관 중 "방사능분석"과 관련하여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 KOLAS 인정 분석기관은 아래 URL의 접속 후 인정 분야에 '화학시험', 세부분야에 '007' 선택 후 검색 결과 참고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3) 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과같이 "방사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발행된 성적서 4) K-40의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이용한계산결과로갈음 가능 위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원료물질에 대여 해외 업체에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서를 요청하는 경우, 우라늄, 토륨 계열의방사성 핵종과 K-40 방사성 핵종에 대한 분석 결과서를 요청하셔야 하며, 해당 국가의 ISO/IEC 17025 인정기관은 https://ilac.org/signatory-search/에 접속하셔서 Economy에해당 국가를 선택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예시) 중국(CHINA)를 선택하시면 'CNAS'가 나오는데 중국 내에 CNAS 인정 분석기관에서 받은 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성적서에 CNAS 표식이있어야 합니다.
- 방사능 농도분석을 의뢰하면 소요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요 기간 및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취급물질의 농도분석을 실시한 뒤에도 주기적으로 농도분석을 해야 하나요?	같은 물질을 반복해서 취급하시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분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급물질이 달라지거나 같은 물질이라도 순도 또는 원산지가 달라지는 경우 농도분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포타슘 화합물은 MSDS를 이용한 계산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포타슘 화합물 방사능농도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frac{\text{k의 총 원자량}}{\text{물질의 총 분자량}}$ X 포타슘화합물순도X 30.6Bq/g ▶ K 원자 1개의 워자량은 39.1이며, 물질의 총 분자량은 MSDS에 기입된 수치를 사용하되, 분자량이 없으면 화학식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 포타슘 화합물 순도는 MSDS 상 범위로 기입될 시 최대값을적용하며, 순도 값이 없을 때는 100% 적용 ex) 순도 99.5 % K2CO3 방사능 농도 계산 = $\frac{\text{방사능 농도(Bq/g)}}{\frac{2X39.1}{138.21}}$ X 0.995 X 30.6Bq/g = 17.23
- 당사는 원료물질을 구매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제조한 제품까지 농도분석이 필요한가요? - 제품이 원료물질과 혼합물의 비율에 따라 다양, 모든 제품에 대한 농도분석이 필요한가요? -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HS코드에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농도분석을 해야 하나요?	제조하신 제품은 원료물질의 함유량으로 농도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산 결과가 등록기준을 초과하거나 현저하게 낮지 않다면 농도분석을 의뢰하시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료물질의 혼합비율에 따라 제조하신 제품의 방사능 농도를 추산하실 수 있습니다. HS코드 내 물품명까지 일치하는 경우, 또는 물품명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도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신규등록 관련 문의

문의사항	답변내용
- 취급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취급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및 등록 첨부서류 구비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측으로 우편 또는 CISRAN 전자민원 접수 및 검토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취급자 혹은 등록제조업자의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의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상기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및 연간 취급 수량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1. K-40(포타슘 40) : 10 Bq/g 초과, 10,000 kBq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 1 Bq/g 초과, 1,000 kBq

문의사항	답변내용
- 당사는 원료물질을 본사에서 수입해온 뒤,사업소로 가져가서 제품을 제조해요. 본사와 사업소 전부 등록해야 하나요?	본사는 원료물질을 수입하므로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해야 하며, 사업소는 그 제품을 판매한다면 생산되는 제품의 용도와 방사능 농도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등록 첨부서류는 별도의 서식이 있나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 등록 첨부서류 표준양식과 세부작성지침은 생활주변방사선정보서비스(http://cisran.kins.re.kr)의(정보마당-자료실-법령/서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수입(출)만하고수출(입)은 안 하는데요, 등록해야 하나요?	취급하시는 물질이 등록기준 농도 및 수량을 만족한다면수출 또는 수입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 등록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국내에서 구매해서 제조과정에서 제품에도 포함 안 되고 전부 소진하는데요, 등록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구매한 물질은 등록대상이 아니나, 공정 중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농도가 등록기준을 초과하고, 연간취급수량 이상 발생한다면 공정부산물 발생시설 운영에 해당되어 취급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업체로부터 받은 방사능 농도 분석 결과서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서로 인정되는 시험 성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SO/IEC 17025 요건을 만족하는 시험기관 또는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발행된 시험 성적서 (다른 국가의 ISO/IEC 17025 인정기관은https://ilac.org/signatory-search/ 접속하셔서 Economy에 해당 국가를 선택하시면 알 수있습니다.) 2) KOLAS 인정 국내 분석기관 중 "방사능분석"과 관련하여인정받은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 KOLAS 인정 분석기관은 아래 URL의 접속 후 인정분야에 '화학시험', 세부분야에 '007' 선택 후 검색 결과 ▶ 참고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3) 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등과 같이 "방사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성적서 4) K-40의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한 계산 결과로 갈음 가능 - 상기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인지 확인해보시고 신규등록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유효하지 않은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서인 경우 서류 검토 시 보완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 원료물질 취급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하면 따로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	2019년 7월 16일부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법률(`19.1.15.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원료물질을 사용 하여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도 등록대상 범위 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원료물질 취급자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 등록제조업자로 "신규등록신청"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신청 시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1번~5번 모두 제출해야하나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첨부서류는총리령에서정하는서류1호~5호에해당합니다. 1호~4호는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자 혹은 가공제품 등록제조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등록제조업자는 5호의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정부산물 처리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록된 공정부산물에 대한 처리 또는 처분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므로 등록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변경신고는 생활방사선법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시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로 우편접수 또는 CISRAN 전자민원신청 가능합니다.
- 원료물질 취급자 해지 방법과 인터넷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료물질 취급자의 등록폐지는 등록변경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변경 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사항에 등록폐지를 기입 해 주시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전후 대비표를 포함한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다만 생활방사선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등록, 등록변경 신고 등의 접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진행하시고자 하는 등록변경신고는 법에 따른 별지 서식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 안전과로 우편접수 또는 CISRAN 전자민원신청 가능합니다.
- 당사는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액상, 고상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공정부산물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원료물질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과정에서 희석된다면희석되는 비율로 폐기물의 방사능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등록기준에 해당될 만한 수치라면 농도분석을 의뢰하신 후 분석 결과가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취급량에 따라 공정부산물 발생 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취급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공정부산물의 핵종별 농도가 0.5Bq/g 미만일 경우 보고뿐만 아니라 기록까지 안 해도 되는가요?	공정상 발생하는 부산물의 K-40 방사능 농도 5Bq/g 미만,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0.5Bq/g 미만일 경우, 생활방사선법에서 규정하는 공정부산물로 정의되지 않으며 기록,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당사는원료물질을사용해서제품을제조하여 산업체에 판매합니다. 이 제품이 가공제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조하시는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가공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거나 타 업체에 판매되어 제조 공정 중 투입되는 형태라면 그 제품은 원료물질로 분류하며, 해당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무게비 등으로 방사능 농도를 산출한 뒤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를 보니 방사선 측정기를 구비하게되어 있던데, 어떤 측정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 당사는 취급 절차가 없는데도 구매해야 하나요?	원료물질 등을 취급, 관리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시면 되며, 규정된 규격 또는 모델은 없습니다. μSv의 단위로 표시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할 것을 권유 드리며 '서베이미터(Survey Meter)'로 검색하시면 여러 측정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보관 창고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운송전문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등 취급시설 및 종사자가 없는 알선판매 업체는 방사선 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으로 건강진단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 관리하는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종사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취급, 관리' 란 물질이 입고되면서부터 최종적으로 출고 또는 폐기되기까지 직접적으로 사용(운반, 투입, 혼합, 포장 등) 또는 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일본 수입 제품의 방사능 안전성을 증명하고 싶어요.	일본 생산 제품의 경우 소비자분들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천연방사성핵종(자연방사성핵종)보다는 세슘-137(Cs-137)과 같은 인공방사성핵종의 방출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므로, 제품에서 인공방사성핵종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사능 분석기관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방사능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방사능 분석 분야의 인정을 받은 일반사업체 측에 비용을 지불하여 의뢰하시면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통관 진행 관련 문의

문의사항	답변내용
- 수/출입하려는 물질의 세관 확인 절차가 궁금해요.	아래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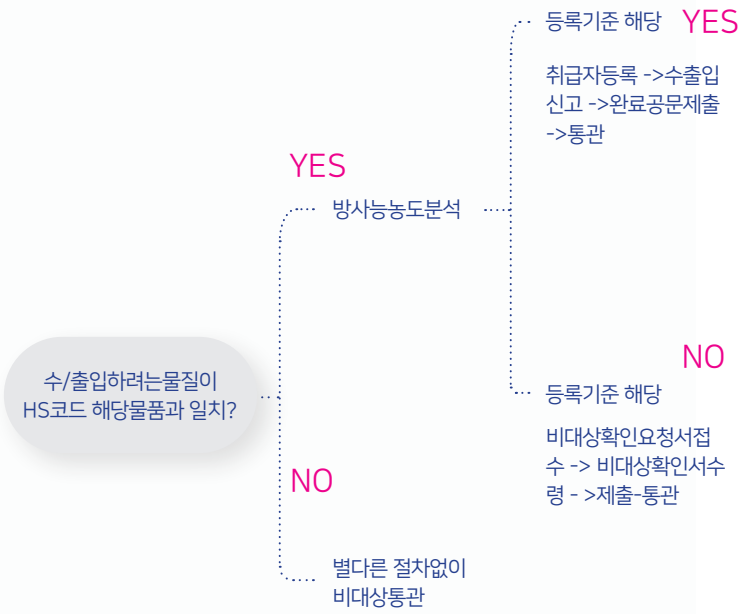
- HS코드에 해당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주변방사선정보서비스(https://cisran.kins.re.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알림마당 > 공지사항 > 4번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관세법 고시개정(`20.4.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 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리카퓸 이외의 실리카 관련 물질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실리카퓸은 제조과정 중 고온에서 산화, 환원되는 과정을 통해 Ra-226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등록기준이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실리카 등 기타 실리콘 계열의 물질은 등록기준 농도 이상의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저희가 취급하는 물질이 실카퓸인지 헷갈려요.	실리콘 계열의 물질 중에는 실리카, 실리카 샌드, 퓸드실리카, 실리카겔, 실리카퓸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물질들은 제조 방법이나 특성 및 용도가 모두 다른 물질입니다. 취급하시는 실리콘 계열 물질의 명칭이 실리카퓸과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원자력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대상 물품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 비대상이라는것을 어디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비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하는 물품이 고시된 "거래품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거래품명과 일치"하여 방사능농도분석을 하였는데 등록 기준 미만인 경우 ▶ "거래품명과 일치"하여 방사능농도분석을 하였는데 등록 기준 이상이나, 연간 취급 수량이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첫 번째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두 번째의 경우,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신 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초 발급 받은 비대상 확인서를 반복하여 제출 가능) 세 번째의 경우,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수출입 하는 때마다 신청하여 취득하신 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대상 확인 요청서 양식은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 4번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대상 확인 요청서' 접수처(이메일) : normimex@kins.re.kr
- 고시된 거래품명 이외의 칼륨화합물을 취급하는데 통관 가능 한가요?	고시된 거래품명 이외의 물품인 경우 비대상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칼륨화합물의 경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료물질 취급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방사능 농도분석을 의뢰하시거나, MSDS 내 정보를 이용하여 방사능 농도 계산을 통해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원료물질을 취급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당사가 수/출입하려는 물질은 HS코드는 일치하지만 거래품명은 일치하지 않는데 통관 가능한가요?	HS코드는 일치하더라도 거래품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는 거래품명과 일치하는 물질이나 품명만 다른 경우 또는 거래품명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비대상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자민원 가이드)

문의사항	답변내용
- 전자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취급자/종사자 전자민원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인허가 전용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정보서비스(https://cisran.kins.re.kr)의 '전자민원안내(취급자/종사자)-공인인증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전자민원 회원가입 후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업용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목록에 공인인증서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방사선인허가 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아닌 경우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증 원본을 출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언제 든지 출력 가능한 건가요?	온라인상의 발급이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찍히게 됩니다. 나중에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위하여 원본은 1회 출력 가능합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02

생활주변방사선 관계 법령 및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부록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공통사항

문의사항	답변내용
- 개정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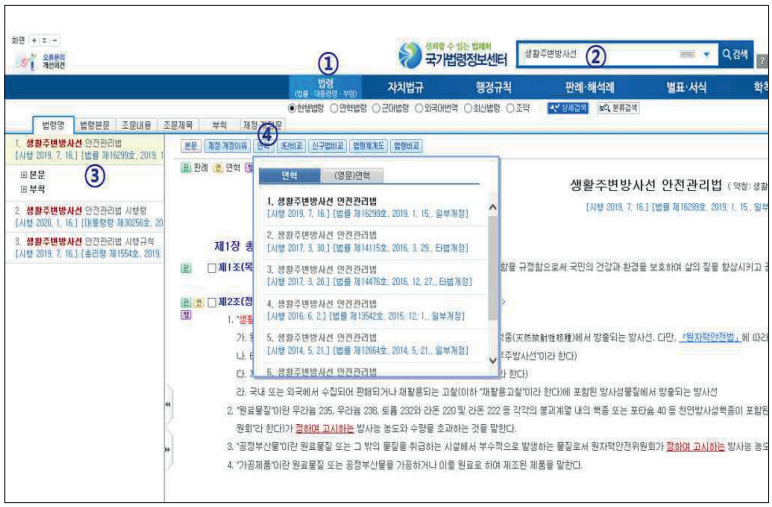 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법령' 탭을클릭한 후 ☞ 부령(보건복지부령 등) 이상을 보통 법령이라 칭하며,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법률은 '법령' 탭에서 검색 ② 검색창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법령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쪽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왼쪽 법령 리스트에서 원하는 법령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3번 과정에 따라 검색된 법령에 대해 과거 개정 이전의 법령 또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 4번의 '연혁' 탭을 클릭하면 개정 이력별로 법령이 리스트 되며, 원하는 법령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확인 가능합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위 그림의 예에서와 해당 법령에(위의 예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이름 앞에 □예(시행 예정의 의미)가 붙은 법령과 법령이름만 나와 있는 법령이 모두 표시되며, 어떤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 개정 조항이 포함된 법령을 검색하려면 □예가 표시된 법령 중 해당 시행일이 표시된 법령을 클릭하면 됨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 탭을 클릭한 후

☞ 위원회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등), 중앙행정기관 고시 훈령 예규를 보통 행정규칙이라 칭하며, 해당 규정은 '행정규칙' 탭에서 검색

② 검색창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행정규칙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쪽의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왼쪽 행정규칙 리스트에서 원하는 행정규칙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3번 과정에 따라 검색된 행정규칙에 대해 과거 개정 이전의 행정규칙 또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행정규칙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4번의 '연혁' 탭을 클릭하면 개정이력별로 행정규칙이 리스트 되며, 원하는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 가능 합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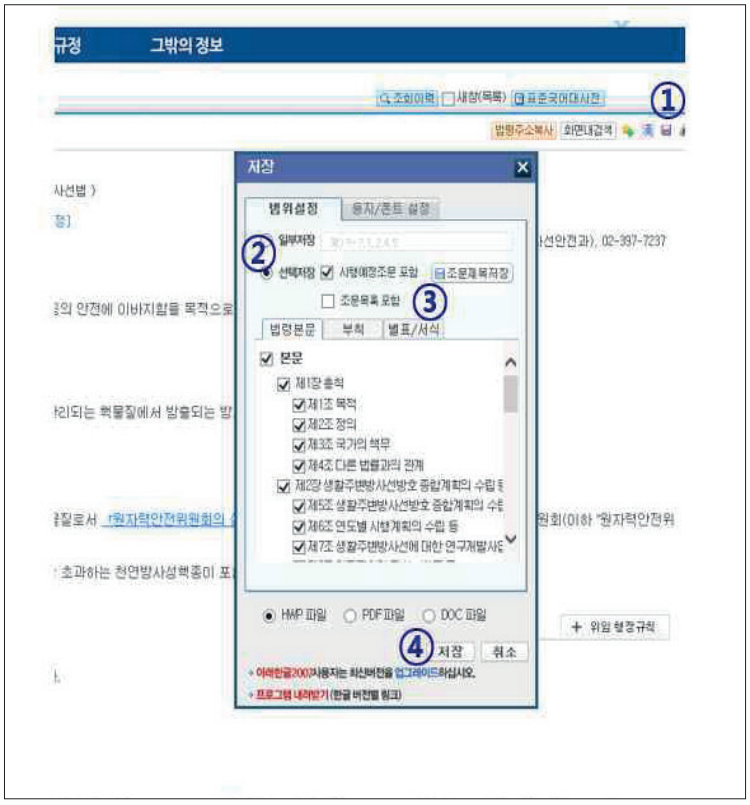

<3> 해당 규정을 내려 받기 하려는 경우

① 상기 또는 <2> 과정을 통해 해당하는 법령 행정규칙을검색하신 후 해당 웹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플로피 디스크 아이콘(저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내려받은 조항을 체크합니다(규정 전문을 내려받을경우, 모든 조항 체크).

③ 내려받을 별표 및 서식을 체크 합니다(기본적으로 별표 및 서식은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므로 별표 및 서식을 내려받을 경우, 해당 별표 서식이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규정을 내려 받습니다(조항과 함께 별표 및 서식까지 내려 받는 경우, 압축 파일 형식으로 내려 받게 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관련

문의사항	답변내용
- 우편대여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으로 추진되었던(라돈방문 측정서비스)의 종료(19.08.31)에 따라 후속대책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부적합제품 및 제조업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생활방사선 결함제품을 퇴출하여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우편대여서비스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편대여서비스는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와 측정에 필요한물품(측정매뉴얼, 밀봉비닐, 측정결과서)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이 직접 동봉된 측정매뉴얼에 따라 의심 제품의라돈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반납하여 주시는형태로 진행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라돈측정기 회송을 위해 CJ대한통운택배 통해 반품형태로 회송해주시면 됩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우편대여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www.kins.re.kr)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 안내사항 확인 →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인 정보기입(주소) → 반납 및 기기훼손/분실 관련 주의사항 확인 → 신청완료 ※ 유선 신청 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1811-8336)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후 접수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대여서비스 신청완료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 접속하여 아래의 상태로 확인가능합니다. - 접수완료 : 접수완료 및 라돈측정기 발송 전 - 대여중 : 라돈측정기 발송 및 신청인 측정 진행 중 - 반납완료 : 회송한 라돈측정기 최종 반납확인 완료
-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후 라돈측정기발송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기 발송은 매주 2회 CJ대한통운택배를 통해 발송합니다. ※월요일 발송 : 목요일~일요일 접수건 ※목요일 발송 : 월요일~수요일 접수건
-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후 대여기간 얼마나 되나요?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대여 기간은 (기기발송 · 회수기간 포함) 7일입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대여가능 횟수 제한이 있나요?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의 대여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건당 1대 또는 2대 대여 가능 합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라돈아이 측정대상 제품 유형이 궁금합니다.	우편대여서비스의 측정대상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구매 및 국내생산 · 수입 라텍스, 침대 및 침구류 * 매트리스, 이불, 베개, 토퍼, 라부인, 쇼파, 쿠션, 카페트, 매트류, 침대커버 (호흡기 밀착형 제품 측정 권장) - 상기 명시된 제품 유형 이외의 제품은 본 서비스에 해당되는 측정대상 제품이 아니므로 측정 결과해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라돈측정기 사용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인가요?	라돈측정기의 사용법은 우편대여 상자에 동봉해 드릴 예정이며, 매뉴얼에 따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기 : 라돈은 천연방사성핵종이므로 실내 공기 중에도 존재하며 이는 제품의 라돈측정 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 30분 이상 환기 후 측정 2) 차폐 : 라돈측정 때 바닥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봉된 밀봉 비닐을 측정제품 아래에 설치한 후 측정 3) 밀폐 : 환기 후 공기 흐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문 및 방문을 닫고 측정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라돈측정기 작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돈측정기의 자세한 사용법은 우편대여 상자에 동봉할 예정이며 매뉴얼에 따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원연결 후 라돈측정기에 동봉된 DC 12V 어탭터를 연결 2) 지시창 확인: 지시창의 숫자가 100%가 되면 계측 자동시작 - 계측 시작까지 약 10분 소요되며, 측정값은 10분 단위로표시 *이상 있는 경우 전원선 분리 후 재연결
- 라돈아이 측정 배경준위 측정과 제품 측정 문의	배경준위 측정 : 제품과 동일 높이에서 50cm이상 이격하여 30분~1시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 제품 측정 : 전원차단 및 재연결 후 제품 상단에 측정기를 위치시켜 30분~1시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 배경준위란 무엇인가요?	자연방사선에 의해 기존에 실내에 존재하는 방사선량입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라돈아이 온수매트 측정 시 전원을 연결하고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제품 구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측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 분해 X) ▶ 높게 측정된 제품 위에 측정기를 장시간 방치하지 않을것을 권장 ▶ 측정값 1.000Bq/m3 이상이면, 1시간 이상 계측하지 말 것 ▶ 다른 제품 계측할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재연결
- 제품측정 전 배경준위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돈은 천연방사성핵종이므로 실내 공기 중에도 존재합니다. 기존 실내 공간에 존재하는 라돈과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을 구분하기 위해 제품측정 전 배경준위 측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배경준위 4 pCi/L(=148 Bq/m ^{3})이상일 경우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측정결과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정확한 제품명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동봉된 측정 결과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대여 기기 번호(발송된 라돈측정기의 기기 번호) 3) 측정제품정보 (제품(모델)명, 제품 종류, 제조사명, 구매처,제조연도, 구입년도) 4) 측정값(배경준위, 제품 측정값을 각각 기재) ▶ 상세정보 확인이 안 될 경우 제품명(매트리스, 베개 등) 으로 기재해 주세요.
- 측정 결과서를 분실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으며, A4용지에 제품등에 정보, 측정값, 측정단위 기재 후 기기 발송 시 동봉 해주시면 됩니다.
- 라돈측정기 사용 후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라돈측정기 반납 시 받은 검출기 전용박스에 담은 후 1) 라돈측정기 : 최초 포장상태와 동일하게 포장 2) 밀봉 비닐 : 사용한 밀봉 비닐은 측정제품이 ▶ 정상 제품인 경우 : 자체 폐기 ▶ 부적합제품일 때 : 제품보관 시 사용 3) 결과서 등 : 최초 포장상태와 동일하게 포장 4) 회송용 라벨지 : 박스 상단의 회송라벨용 (주소기표지)부착 하여 * CJ대한통운을 통해 라돈측정기를 회송합니다.
- 우편대여서비스 측정후 반송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J대한통운으로 방문, 유선, 온라인을 통해 반품 택배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접수 시 : CJ대한통운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 → 조회예약 2) 유선 접수 시 : CJ대한통운 콜센터(☎ 1588-12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라돈측정기 공유, 대리로 측정 가능한가요?	신청인 이외의 개인 · 집단에게 라돈측정기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대리로 측정하는 행위는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의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라돈측정기 분실 및 훼손 시 변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편대여 서비스 신청 전 라돈측정기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측정기 분실 및 훼손 시 기기 수리비 전액 혹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 측정기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음
- 측정 결과서 분석은 회송 후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측정 결과서 회송 후 결과판독까지는 최소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밀분석이 필요할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있으며, 결과값은 유선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결과값에 대한 기준치 안내는 불가, 측정 결과값 및 사용 여부만 확인 가능
- 제가 측정한 라돈 수치가 위험한 수치인지 궁금해요.	라돈은 기체 형태의 방사성 핵종이므로 공간 내 환기 정도, 즉, 외부 신선한 공기와의 희석 정도에 따라 공간 내 방사능 농도(pCi/L 또는 Bq/m3)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주로 주간)에는 집 문 또는 창문을 여닫거나 사람이 집 안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 공기 순환 및 외부 공기와의 희석이 잘 이루어지 므로 농도가 낮아집니다. 반면, 취침하거나 사람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주로 야간)에는 반대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148 Bq/m^3(=4 pCi/L)'라는 기준은 환경부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으로써, 해당 수치는 위험과 안전의 경계가 아닌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정해놓은 목표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하신 결과가 상기 수치를 상당히(2~3배 이상) 초과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 따를 것을 권고드립니다. ▶ 실내(방) 측정 : 환기 더욱 자주 시행 ▶ 신체 밀착 제품(매트리스, 장신구 등) 측정 :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 신청 등 문의 ▶ 화분 토양(마사토) 등 : 실외 또는 베란다로 이동

문의사항	답변내용
- 대여한 라돈측정기로 집안의 공기질(대리석, 싱크대상판 등)을 측정가능한가요?.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가측정 매뉴얼은 가공제품 측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이는 건축자재 및 실내 공기 질 측정에 맞는 측정방법이 아닙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환경부 민원 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민원센터 연락처 : 1577-8866
- 라돈측정기로 배경준위를 측정 해보니 낮에는 기준치 미만이나 밤에는 기준치 초과로 측정값이 높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돈은 기체 형태의 방사성 핵종이므로 공간 내 환기정도 등 외부 신선한 공기와의 희석 정도에 따라 공간 내 방 사능 농도(pCi/L 또는 Bq/m^3)가 달라집니다. ▶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대(주로 주간)에는 집 문 또는 창문을 여닫거나 사람이 집 안을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 공기 순환 및 외부 공기와의 희석이 잘 이루어지므로 농도가 낮아집니다. ▶ 반면, 취침하거나 사람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주로 야간) 에는 반대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문의 내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염된 제품을 측정한 측정기로 다른 제품을 측정하면 측정기도 오염돼서 오염이 전이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선, 우편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받으신 측정기는 오염된 제품을 측정했더라도 측정기 수거 후 장비 점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측정기가 오염됐을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오염된 검출기를 사용하시더라도, 검출기 내부에 내장된 챔버가 오염된 것일 뿐 검출기 자체가 라돈이나 토론 가스를 방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사용제품 보관/폐기 관련

문의사항	답변내용
- 부적합제품의 확인 및 보관 방법이궁금합니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회송하신 측정결과서를 확인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제품 결함 여부 등 판단 결과를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부적합제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와 라돈 측정값에 따라 자체 폐기, 보관 또는 폐기, 지자체 수거 폐기 대상 등의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 부적합제품의 보관 시에는 동봉된 비닐 사용을 권유드립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 기준치 초과 제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명령 발표 모델(업체)의 경우 해당 제조사로 연락하셔서 제품의 수거, 교환, 보상 등의 조치를 받으셔야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행정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품의 제조사에 대한 업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품사용은 중단해 주시고 비닐로 밀봉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에 대한 조사는 상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정부 발표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제품의 폐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제품이라면 일반폐기물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거주 하시는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하시어 부착 후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작을 경우 종량제봉투에 넣어 폐기 가능) 다만, 일반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구매제품 폐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가공제품(라텍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수거 주체도 없습니다. 폐기를 원하신다면, 일반폐기물 처리와 동일하게 거주 하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매하시어 부착 후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일반폐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부적합제품을따로보관하는방법이 있나요? (집안에서 보관해도 안전할까요?)	라돈/토론 가스 흡입을 통한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해당 제품을 비닐로 덮거나 포장해서 보관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닐로 밀봉 시 라돈/토론은 99.9% 이상 차단됩니다.
- 행정명령 발표된 국내 업체(모델)제품을 알고 싶어요.	행정발표 모델(업체) 등 보도자료 발표는 상부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 - 알림마당 -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연락처:02-397-7300(생활방사선안전과)
- 일반폐기물(사용자 폐기) 처리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제품의 수거나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없습니다. 라돈과 토론은 일반 토양이나 암석에서도 방출되며, 오랜 기간 밀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대진침대 수거 과정 및 보관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선 측정 결과 모두 자연준위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폐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서비스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수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수거를 신청한 제품에 한해서만 수거를 진행 하기 때문입니다. 리콜 명령의 경우 정부가 제조사에서 수거를 강제할 수 있지만, 행정명령은 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이 결함제품임을 인지 하고 수거를 신청해야만 수거할 수 있습니다.
- 한 번만 측정하면 되나요?	제공해드린 자가측정 매뉴얼 절차에 따라 측정을 진행 해주시면 되며 다회 측정하신 경우, 측정결과서에 별도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정부에서 수거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 16조(결함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수거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안내받았는데 종량제봉투 폐기 가능한가요.	종량제봉투에 넣어 폐기할 수 있지만, 제품이 재사용 되지 않도록 제품을 훼손하여 폐기해주셔야 합니다.

라돈, 토론 관련

문의사항	답변내용
- 라돈이란 무엇인가요?	토양이나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무색, 무취, 무미의 천연 방사성핵종으로, 생활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라돈(Rn) 동위원소는 라돈(Rn-222) 및 토론(Rn-220)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라돈(Rn-222)은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되며 반감기는 3.8일입니다. 토론 (Rn-220)은토륨(Th-232)이붕괴되어생성되며반감기는 55.6초입니다. (*반감기: 방사성핵종의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든 시간)
- 라돈과 토론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측정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성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돈과 토론이 같은 농도인 경우 라돈이 인체의 영향이 더 크며, 토론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발생원(매트리스)에서 조금만 떨어 져도 영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 라돈방출제품사용으로인한방사선피폭을 저감 할 수 있나요?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단시간만 경과해도 붕괴 소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돈방출제품(매트리스, 베개 등) 사용 시 호흡기로부터 멀어질수록 토론의 농도는 급격히 감소하므로 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구류의 경우 이불, 커버 등을 덮어 사용하게되면 호흡기로 도달하는 라돈.토론 농도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연방사성핵종을 인위적으로 포함한 라돈방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라돈, 토론에 대한 외부피폭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돈 및 토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주로 알파선입니다. 알파선은 피부를 뚫지 못하므로 알파선으로 인한 외부 피폭선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FAQ

문의사항	답변내용
- 라돈이 방출되는 제품을 사용하다폐기한 경우 이불 베개 등 같이 사용한 제품도 오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에서 라돈/토론이 방출되더라도 공간 내에 두었던 이불이나 베개 등 다른 제품이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돈이 방출되는 제품을 밀봉보관 또는 폐기한다면 다른 제품은 지속 사용하셔도 무방 합니다.
- 라돈이 방출되는 제품들을 한 공간에 두면 그만큼 비례해서 피폭이 증가하나요?	라돈 및 토론이 방출되는 제품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면 그 공간의 라돈 및 토론 방사능 농도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돈 및 토론은 기체 형태의 천연방사성 핵종 으로, 제품에서 방출되어 공기 중으로 확산, 희석되는 과정에서 그 수치가 정확히 각 제품들의 농도의 합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제품의 라돈 및 토론 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다면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기 위해 제품들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문의사항	답변내용
- 게르마늄 팔찌(건강 팔찌), 보정 속옷, 은 나노 매트 등 라돈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요	순수 게르마늄과 토르말린은 자연에서 채취된 암석이므로 라돈의 어미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불순물의 형태로 극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라돈 농도 또한 무시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순수 게르마늄과 토르 말린이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우라늄, 토륨 함량이 높은 타 암석을 혼합하여 라돈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보정속옷의 경우 자수정, 화산석 등 천연광물을 포함 하여 음이온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들은 전부 사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은나노 제품의 경우 은가루와 라돈은 관련이 없으므로 라돈에 의한 위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밖의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행정 명령을 받은 제품 확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생산된 일본제품이 있는데 계속 사용해도괜찮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 수 · 축산식품이며, 일본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방사능오염 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 공산품의 경우, 상기 지역에서 채취되는 원료로 생산되기보다는 플라스틱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 및 생산되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방사능이 함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실 경우, 방사선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 오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측정대행업체는 방사선안전관리포털(rasis.kins.re.kr)에 접속 후 '인허 가통계정보-업무대행기관정보'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간행물 개정이력
민원안내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2020년 12월 : 초판 발행



민원안내집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주소]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Tel. 1811-8336